「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 「산업 R&D 혁신방안」('26.1.28) 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 지원 확대, M.AX 얼라이언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도화

○ 경제안보 강화, 시장성과 창출,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강화 방안 마련 및 규정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① (지역균형발전과제 신설) 지역균형성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과제' 유형 신설 및 연구개발비 정부 지원비율 확대로 참여 유인 강화(제2조제1항제62호, 제19조제4항, 제21조제3항제14호, 제24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25조제13항, 제25조제15항)

② (제조인공지능대전환과제 신설) 제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인공지능 대전환 연계과제' 유형 신설 및 연구개발비 정부 지원비율 확대로 참여 유인 강화(제2조제1항제64호, 제24조제3항)

③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수요 앵커기업의 자율적 R&D 추진이 가능하도록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추진 근거 마련(제2조제1항제66호, 제4조제2항제6호)

④ (수요기관) 수요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개발의 실효성 및 현장성 강화(제2조제1항제10의2호, 제24조제2항제1호, 제25조제4항, 제27조제9항, 제32조제9항)

⑤ (스타 엔지니어 트랙) '스타 엔지니어 트랙' 제도 신설 및 기업연구자 성과보상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강화(제2조제1항제65호, 제24조

제3항, 제25조제14항, 제25조제15항, 제51조제4항)

⑥ (대-중소협력형 과제)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지원하여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유도(제2조제1항제63호, 제24조제3항)

⑦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 관련 기술개발시,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비율을 원천기술형 수준 적용(제24조제3항)

⑧ (안전관리) 안전관리형 과제 평가시 안전전문가 참여 및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안전점검 현장실태 조사 근거 마련(제6조제1항, 제21조제6항, 제32조의2제2항)

⑨ (산업기술 마스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규제 해소 등 R&D 후속지원을 위한 '산업기술 마스터'의 활동 및 제도운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제10조의2)

⑩ (산업기술분류표) 연구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신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산업기술분류표 개정(별표1, 별표4)

⑪ (공무원평가참여) 공무원 및 전문기관 직원의 평가위원 참여여부를 사심위에서 검토하도록 근거 신설(제5조제2항제5호)

⑫ (최소인건비계상률) 연구자의 과제 과다 참여 방지제도를 '3책5공' 기준만 유지하고, 최소 인건비계상률 규정 삭제를 통한 현장 부담 완화(제20조제2항, 별표6)

⑬ (외주용역비 완화) 외주용역비 승인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외주용역비가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하게 당초 금액 대비 20% 증감한 경우에는 협약 변경 승인 불필요(제27조제2항제16호, 제30조제10항, 별표6)

⑭ (자체정산 확대) 상장을 통해 자체 정산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영리기관 및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액과제에 대해 자체 정산을 허용하여 연구기관 부담 완화(제27조제2항제16호)

⑮ (정산증빙 간소화) 대학에만 적용되었던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일부 증빙자료 면제 적용 대상을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별표5)

⑯ (선정평가 신속통보) 평가결과를 선정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약까지의 행정절차를 신속화(제22조제2항)

⑰ (정산 처리기한 명확화) 전문기관의 정산금 국고납입 처리기한 기준을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에서 정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제34조의2제6항)

⑱ (협약체결기간 개선) 별도 외부검토절차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최종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14일 이내,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자유공모형 과제의 경우 60일 이내로 예외 허용(제26조제1항)

⑲ (R&D사업기획과제 특례) “R&D사업 기획과제”를 정의하고 기획·평가·관리에 대해 예외 적용(제2조제1항제68호, 제51조제8항)

⑳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 개선) 대형선도과제 발굴 절차를 개선하여 서로 다른 세부사업 내 과제를 하나의 통합형 과제로 기획할 수 있는 대형선도과제 추진(제2조제1항제67호, 제4조제2항제7호, 제19조제5항)

㉑ (소프트웨어 다년계약)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해 다년 계약을 허용하고, 연차별 분할 집행 가능(별표5)

㉒ (최종보고서 공개 통지) 최종보고서가 비공개된 경우 비공개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연구기관이 비공개 연장 여부를 사전에 검토·조치 할 수 있도록 개선(제37조제7항)

㉓ (연구장비 도입기준 완화) 연구자 자율성 확대 및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장비 도입 기준 금액 상향(제8조제1항제1호, 별표6, 별표7)

㉔ (협약변경 요청기간 완화)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지난 후에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협약변경 요청이 가능하도록 완화(제27조제2항)

㉕ (평가등급 폐지) 기존의 목표달성률 중심의 평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제재 처분 대상이 되는 불성실 과제만 판정하여 ‘완료/미완료’ 2단계로 구분(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3조, 제48조, 별표5)

㉖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화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 산업통상부 ----------.
5의2. ~ 9. (생 략)	5의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10의2로 이동>
9의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	10의2. “수요기관”이란 -------- 연구개발기관----------.
9의3. ~ 9의6. (생 략)	9의3. ~ 9의6. (현행과 같음)
9의7.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	9의7. ----------

현 행	개 정 안
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지정 기간에 한함)	---------- 산업통상부---------- ----------
10. ~ 14의6. (생 략)	10. ~ 14의6. (현행과 같음)
14의7.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국연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14의7. ---------- 국연법 제13조제8항----------.
14의8. ~ 21. (생 략)	14의8. ~ 21. (현행과 같음)
2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2. ---------- 미완료인 ----------.
23. ~ 49. (생 략)	23. ~ 49. (현행과 같음)
50. “복수형 과제“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을 말한다. (매우 중요한 품목이며, 잠재 후보기업들의 기술역량	50. ----------

현 행	개 정 안
이 유사한 경우 또는 소수의 수요기업이 시장을 과점 한 경우에 적용한다.)	----------수요기관이 ----------
51. ~ 61. (생 략)	51. ~ 61. (현행과 같음)
<신 설>	62. “지역균형발전과제”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주 목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신 설>	63. “대-중소 협력형 과제”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 중소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과제를 말한다.
<신 설>	64.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연계과제”란 제조업의 공정·설비·운영 전반에 데이터와 산업 전반에 확산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과제로서 공고시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65. “스타 엔지니어 트랙”이란 괄목할 만한 R&D 성과를 창출한 기업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선정한 스타 엔지니어의 지원 연구개발과제에 일부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66.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과제”란 기업이 주관하여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로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승인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67. “대형선도과제”라 함은 미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며, 융·복합을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신 설>	68. “R&D사업 기획과제”란 R&D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과제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전략기획단) ① (생 략)	제4조(전략기획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동체계인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과제의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신 설>	7. 대형선도과제의 지정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5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또는 동급 이상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별도의 위원회나 회의체에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지정한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것으로 본다.	② ----------. --- 산업통상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외부기술 도입의 필요성 및 규모 등)	5. ----------(산업통상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 직원의 평가단 참여 여부, 외부기술 ----------)
③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산업통상부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산업 R&D 조정위원회) ①	제5조의2(산업 R&D 조정위원회) ①

현 행	개 정 안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산업 R&D 조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급, MD, PD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전략기획단이 운영할 수 있다.	② ---------- 산업통상부 ----------.
제6조(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제6조(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① 장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시장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위원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 인문·사회과학, 안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공동 관리·활용하며, 그 외의 전문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하에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③ ---------- 산업통상부----------.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①·② (생 략)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 직원(PD 제외) 2. ~ 5. (생 략) ④ ~ ⑫ (생 략)	제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산업통상부 ----------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장비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3.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 ----------. 1. ---------- 3억원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산업기술 마스터) ① 장관은 통합진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규제 애로 해소 등 R&D 후속 지원에 대한 책임관리를 위하여 산업기술 마스터(이하 “마스터”라 한다)를 두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진흥기관의 장은 마스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진흥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기획) ① (생 략)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품목지정으로 기획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및 보안과제 대상 검토 2. ~ 4. (생 략) ③ ~ ⑥ (생 략)	제18조(연구개발과제기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기획 ----------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 ③	제19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 ③

현 행	개 정 안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역균형발전과제의 경우, 주관 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을 비수도권 또는 특정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
<신 설>	⑤ 대형선도과제의 경우, 관계 세부사업 간 예산 조정 및 지원기준 적용은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신청) ① (생 략)	제20조(사업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학생연구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	② ----------동시----------.

현 행	개 정 안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연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6. 국연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6호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한다.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본문의 적용을 제외한다.	③ ---------- 산업통상부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선정평가) ①·② (생 략)	제21조(선정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	③ ----------

현 행	개 정 안
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연구개발과제의 고용, 생산 등 지역적 파급효과<u>(지역 기여도의 판단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u>	14. ------------<u>(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고려 가능)</u>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u>있으며,</u>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과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 <u>있으며, 품목지정 및</u> ---------------------------.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① (생 략)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선정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외국과 공동펀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적용)에 연구개발기관--------.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① ----------. -- 수요기관----------
②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	② ----------. ----------

현 행	개 정 안
관에 대해서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1. 수요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연구개발과제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관으로만 구성된 경우(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제6호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고, 제7호에서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 ---------- 제17호----------.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1. 지역균형성장과제
<신 설>	12.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연계과제
<신 설>	13. 산업통상부 연구개발과제에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지원 및 제조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
<신 설>	14. 스타 엔지니어 트랙 해당과제
<신 설>	15. 대-중소 협력형 과제
<신 설>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3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11. (생 략)	17. (현행 제11호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①·② (생 략)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른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공고시 정한	④ ----------,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다.
<table>
<tr><th rowspan="2">연구개발기관 유형</th><th>연</th></tr>
<tr><th>원천기술형</th></tr>
<tr><td>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td><td>해당 연구개발기관</td></tr>
<tr><td>중견기업</td><td>해당 연구개발기관</td></tr>
<tr><td>중소기업</td><td>해당 연구개발기관</td></tr>
<tr><td>그 외</td><td></td></tr>
</table></td><td>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고, 그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부담 비율을 5%까지 감경할 수 있다.
1. 수요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고시 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4. 연구개발과제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관으로만 구성된 경우(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td><td>
<table>
<tr><td rowspan="2">연구개발기관 유형</td><td>연</td></tr>
<tr><td>원천기술형</td></tr>
<tr><td>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td><td>해당 연구개발기관</td></tr>
<tr><td>중견기업</td><td>해당 연구개발기관</td></tr>
<tr><td>중소기업</td><td>해당 연구개발기관</td></tr>
<tr><td>그 외</td><td></td></tr>
</table>
</td></tr>
<tr><td>1. ~ 3. (생 략)
4. (생 략)
⑤ ~ ⑫ (생 략)
<신 설></td><td>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⑤ ~ ⑫ (현행과 같음)
⑬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기준을 공고시 명시한 경우, 지역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역인재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기관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td></tr>
<tr><td><신 설></td><td>⑭ 기업의 기업연구자 성과 보상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기준을 공고시 명시한 경우, 기업이 기업연구자의 R&D 성과에 대</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해 보상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도 성과보상 금액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기관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
<신 설>	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였으나 기준금액(지역인재 인건비 및 성과보상 금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협약의 체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등	제26조(협약의 체결) ① ---------- ---------- ---------- ------ 이내(별도 외부검토절차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최종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14일 이내,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자유공모형과제의 경우 60일 이내)---. -----

현 행	개 정 안
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② ~ ⑯ (생 략)	② ~ ⑯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제26조의2(협약체결의 중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단, <u>제26조제14항</u>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2. ---------- <u>제26조제15항</u>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협약의 변경) ① (생 략)	제27조(협약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제11호에 따른 직접비 이월은 단계 연구개발기간 <u>종료일까지)</u> 가능하다. 다만, 정	② ---------- <u>종료일까지) 가능함이 원칙이나, 전문기</u>

현 행	개 정 안
책지정 연구개발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관의 장이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요청이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외주 용역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단,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16. ---------- 경우(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변경된 금액이 1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는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1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오기입이 명백한 경우 및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전 계획변경인 경우에 한정)	17. ---------- 변경
<신 설>	18.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혁신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연구혁신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현 행	개 정 안
	과제의 경우, 수요기관은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개발내용 변경 의견을 주관기관에 제시하여 주관기관이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6에 의한 단계·특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 - 미완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③ ---------- ‘중단(성실)’, ‘미완료’로 ----------.
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 ⑨ (생 략)	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 ⑨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⑩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⑩ ----------, ----------. --, 1억원----------.
제32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① ~ ⑧ (생 략) <신 설>	제32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제출시 수요기관 입장의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개발내용 변경의견'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27조 등의 절차를 통해 필요한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제32조의2(진도점검) ① (생 략)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구	제32조의2(진도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 행	개 정 안
개발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 수 있으며, 안전관리형 과제의 구축된 장비 및 시설물이 있을 경우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단계평가) ① (생 략)	제32조의4(단계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보통)”로 판정한다.	② ----------, “중단(성실)”, “완료”, “미완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으로 판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28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④ ---------- 미완료로 ----------.
제32조의6(최종평가) ① (생 략)	제32조의6(최종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시험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특정하기 곤란	② ----------. ----------

현 행	개 정 안
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방법에 대한 개발을 위탁하여 얻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자문을 거쳐 얻은 시험결과(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거나 수요기업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 수요기관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③ ---------- "완료", "미완료"로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고 시 우수연구성과 연계지원 가능 여부가 표시된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우수성과 창출이 기대될 시 연계R&D 계획을 포함하여 기간연장 및 예산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통하여 기대성과의 우수성, 연계R&D 계획, 기간 및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후속지원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 연계지원이 가능하다고 ----------. ---------- ----------.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7(평가 및 이의 절차) ① (생 략) ②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32조의7(평가 및 이의 절차) ① (생 략) ② ---------- "미완료"로 ----------.
제3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우수"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연구개발과제 등을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
제34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서식 제7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제34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4. (현행과 같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현 행	개 정 안
	상장법인인 경우
<신 설>	6. 연평균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5.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7. ---------- 연구개발기관 또는 과제인 경우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정산을 실시한 후 연구개발기관이 확인한 현물부담 확인서를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 ① ~ ⑤ (생 략)	제34조의2(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장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회수금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납입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업무 처리기한은 연구개발기관의 회수금 납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국고납입 기준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⑥ ---------- -. ---------- ------ 정산 확정일로부터 1년 --

현 행	개 정 안
1년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① ~ ⑥ (생 략)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산업통상부)----------.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 ⑥ (생 략)	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2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기간이 설정된 경우, 비공개기간 만료일

현 행	개 정 안
	로부터 3개월 이전에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비공개기간의 만료사실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① 장관은 전문기관이 기술료요령 제5조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① ---------- 제3조제1항제6호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2조의4, 제32조의5에 따른 "중단" 및 제32조의6에 따른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휴·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 ---------- "중단", "미완료" ---------- "미완료"----------

현 행	개 정 안
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41조(사업 보안) ① ~ ④ (생 략)	제41조(사업 보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문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약, 최종 평가 결과 <u>불성실수행</u>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 <u>미완료</u> ----------.
제43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u>산업통상자원부</u> 및 전문기관·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 <u>산업통상부</u> ----------.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참여연구자 등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산업통상부----------.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 ① ~ ③ (생 략)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관은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및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에 대하여는 재제처분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 ---------- 제재처분----------. ----------.

현 행	개 정 안
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⑱ (생 략)	⑤ ~ ⑱ (현행과 같음)
제45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 ① (생 략)	제45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때에는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② ---------- 산업통상부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8조(포상 등) ① ~ ② (생 략)	제48조(포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연구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우수)'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2. <삭제>
제51조(적용 특례) ① ~ ③ (생 략)	제51조(적용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초고난도 과제 및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④ 초고난도 과제, 혁신도전형 ---------- 스타 엔지니어 트랙 해당과제----------

현 행	개 정 안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 ⑦ (생 략) <신 설>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R&D사업 기획과제의 경우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52조(위탁 업무 및 수탁자) 산촉법 시행령 제57조 제8항에 따라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산촉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촉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2.·3. (생 략)	제52조(위탁 업무 및 수탁자) ----------. 1.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3. (현행과 같음)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제16조 관련)(변경 전)

<대분류: 기계 · 소재>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정밀 생산 기계	절삭 가공기계	100101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100401
	연삭/연마 가공기계	100102		전동용 요소부품	1004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3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1004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4		회전축용 요소부품	100404
	수치제어장치	100105		배관용 요소부품	100405
	프레스 기계	100106		유공압 부품	100406
	사출 기계	100107		액츄에이터	100407
	CAD/CAM 관련 S/W	100108		절삭/연삭공구	100408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100109		치공구	100409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100110		금형	100410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00201		요소부품 관련 S/W	100411
	전기 및 전자장치	100202		기타 요소부품	10041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00203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100501
	공조기술	100204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100502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100205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100503
	안전도 향상기술	100206		기계 자동화 기술	100504
	차량 지능화 기술	100207		조립/정밀 이송기술	100505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100208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100506
	시스템 통합기술	100209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IT·SW	100507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100210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100508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00211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100601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100212		인쇄/섬유기계	100602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100301		포장기계(식품 등)	100603
	보일러/로설비	100302		건설/광산기계	100604
	유체기계	100303		일반가공기계	100605
	수처리 설비	100304		방재소방기계	100606
	폐기물 처리설비	100305		운송하역기계	100607
	대기오염 방지 설비	100306		정보산업장비	100608
	건조/농축 설비	100307		산업/일반기계관련 S/W	100609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100308		바이오기계	100610
	IBS/HA 시스템 기술	100309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100611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IT·SW	10031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100311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조선/해양 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주조/용접	사형주조	1011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금형주조	101102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특수주조	101103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다이케스팅	101104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주조/용접재료	101105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Brazing/Soldering	101106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아크용접	101107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조선/해양시스템관련 IT·SW	100709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기술	100710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항공/우주 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10120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 시스템	100803		압출기술	1012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인발기술	101203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압연기술	101204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판재성형기술	101205
	고체 추진체 발사체 시스템	100807		분말제조기술	101206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분말가공기술	101207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IT·SW	100809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나노·마이크로 기계 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표면처리	열처리기술	101301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도금기술	101302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박막제조기술	101303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용사기술	101304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100905		에칭기술	101305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부/방식기술	101306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침탄/질화기술	101307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IT·SW	100908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금속재료	구조재료	101001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기능재료	101002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복합재료	101003		공정개선기술	101402
	재료공정기술	101004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생체재료기술	101007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청정생산 관련 IT·SW	101408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			

<대분류: 전기 · 전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광응용 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 기기및 전자응 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레이저 가공기	200102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결상기기	200103		조명기기	200603
	광계측·제어기기	200104		소형가전	200604
	광원	200105		백색가전	200605
	광소재	200106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부품	200107		냉·난방기기	200607
	광소자	200108		자동판매기	200608
	기타 광응용기기	200109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반도체 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노광·트랙장비	200202	계측 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에칭 장비	200203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폴리싱(CMP)장비	200204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증착장비	200205		환경계측기	200704
	이온주입장비	200206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09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영상/ 음향 기기	TV수상기	200801
중전 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방송수신기	200802
	전력변환기기	200302		3차원 영상기기	200803
	전력용 재료	200303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변압기류	200304		화상통신	200805
	개폐기류	200305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전광판	200807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휴대용 AV기기	200808
	전기로	200308		카 오디오	200809
	전선	200309		방송 AV기기	200810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스피커	200812
	전원장치	200312		마이크로폰	200813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기타 중전기기	200314	전지	전지재료	200901
반도체 소자및 시스템	Si 소자	200401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화합물 소자	200402		응용 및 활용기술(HEV 등)	200903
	MEMS 소자	200403		일차전지	200904
	Sensor용 소자	200404		이차전지	200905
	반도체 재료	200405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SoC	200406		기타 전지	200907
	설계 Tool	200407	디스 플레이	LCD	201001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PDP	201002
전기 전자 부품	센서 부품	200501		FED	201003
	PCB 부품	200502		OLED	201004
	커패시터 부품	200503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자성재료 부품	200504		E-Paper	201006
	기록매체 부품	200505		3D	201007
	복합 부품	200506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USN	RFID기술	300601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모바일-RFID	300603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활용서비스 플랫폼 및 응용SW	300604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System Integration	300803
위성-전파	위성통신·방송 전송	300301		Internet SW	300804
	위성통신·방송 단말	300302	디지털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위성항법	300303		가상현실	300902
	탑제체 및 관제	300304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EMI/EMC	300305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전자파기기	300306		게임 및 u-러닝	300905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301001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물리보안	301002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융합보안	3010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위성·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광대역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전달망	300502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가입자망	300503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정밀 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400101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400501
	의약제제	400102		대기오염 방지기술	400502
	농약 중간체/원제	400103		환경설비기술	400503
	농약제제	400104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400504
	염/안료 및 중간체	400105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505
	계면활성제	400106		기상장비산업기술	400506
	윤활유	400107		기상서비스산업기술	400507
	첨가제	400108	수질/ 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400601
	도료/코팅제	400109		토양오염 방지기술	400602
	접착제/실란트	400110		해양오염 방지기술	400603
	유·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400111		환경설비 기술	400605
	감광재료	400112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400606
	화장품/소재	400113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607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400114	섬유 재료	천연섬유	400801
	나노응용기술	400115		합성섬유	400802
	기타 합성응용제품	400116		바이오·재생 섬유	400803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400201		슈퍼섬유	400804
	개질기술	400202		나노섬유	400805
	복합재료제조기술	400203		섬유강화 복합재료	400806
	전기·전자정보용 소재기술	400204		섬유가공제	400807
	의료용 소재기술	400205		기타 섬유재료 및 부자재	400808
	에너지·환경산업용 소재기술	400206	섬유 제조 공정	중합·개질기술	400901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400207		제사·사가공기술	400902
	고분자 재활용기술	400208		제·편직기술	400903
	고분자가공기술	400209		부직포기술	400904
	나노소재기술	400210		디자인·봉제기술	400905
	기타 고분자 재료	400211		염색기술	400906
화학 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400301		섬유가공기술	400907
	촉매 응용기술	400302		섬유강화 복합재료 기술	400908
	공정시스템기술	400303		기타 섬유공정기술	400909
	공정설비기술	400304		섬유제조설비	400910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400305	섬유 제품	의류패션제품	401001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400306		생활용 섬유제품	401002
	기타 화학공정	400307		산업용 섬유제품	401003
화학 제품	제지	400401		나노섬유제품	401004
	인조피혁	400402		융합섬유제품	401005
	천연피혁	400403		기타 섬유제품	401006
	고무(타이어포함)	400404		섬유제품 관련 IT·SW	401007
	기타 화학제품	400405			

<대분류: 바이오 · 의료>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의약 바이오	단백질의약품	500101	치료기기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500401
	항체의약품	500102		방사선치료기	500402
	백신	500103		수술용 치료기기	500403
	균주/효소의약품	500104		수술용 로봇	500404
	바이오인공장기	500105		한방용 치료기기	500405
	세포치료제	500106		기타 치료기기	500406
	유전자치료제	500107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407
	원료의약품	500108		한방용 진단기기	500408
	천연물의약품	500109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409
	약효 및 안전성 평가기술	500110		분자유전진단기기	500410
	시약/진단체	500111		초음파진단기기	500411
	바이오생체재료	500112		X-ray 및 CT	500412
	cGMP 생산기반기술	500113		MRI	500413
	기타 의약바이오 제품/기술	500114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414
	조직치료제	500115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415
산업 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500201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416
	바이오플라스틱	500202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501
	바이오화학촉매기술	500203		임플란트	500502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500204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503
	기능성 화장품소재	500205		생체재료	500504
	기능성 식품소재	500206		의료용 소재	500505
	바이오환경	500207		재활훈련기기	500506
	바이오매스	500208		이동지원기기	500507
	기타 산업바이오제품/기술	500210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508
	표준화 및 인증기술	500211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509
	바이오화학공정기술	500212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510
융합 바이오	바이오공정기술	500301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601
	바이오진단기기	500302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602
	바이오분석기기	500305		의료정보표준화	500603
	기타 진단기기소재	500306		U-HER(electronic health record)	500604
	바이오마커 기반기술	500307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605
	기타 융합바이오 제품/기술	500308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500606
			그린 바이오	식물공장 활용기술	500701
				형질전환생물체	500702
				친환경작물보호제	500703
				미생물작물보호제	500704
				기타 그린바이오 제품/기술	500705

<대분류: 에너지 · 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포집기술	600201	신재생에너지	수소-제조	600807
	이산화탄소활용(전환)기술	600202		수소-이송 및 저장	600808
	이산화탄소저장기술	600203		수소-인프라 구축	600809
	비이산화탄소관리기술	600204		연료전지-이동형	6008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온실가스	600205		연료전지-고정형	600811
자원개발	석유가스	600301		연료전지-기타	600812
	광물자원	600302		태양열	600813
	광해관리	600303		바이오	6008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원개발	600304		폐기물	600815
자원순환	무기계자원회수	600101		수력	600816
	유기계자원회수	600102		해양	600817
	재제조	600103		지열	6008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원순환	600104		청정연료	600819
화력발전	석탄/가스화 발전기술	600401		수열	600820
	가스터빈 발전기술	600402		달리 구분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600821
	무탄소 발전기술	600403	에너지효율향상	히트펌프	600901
	발전 환경 청정화 기술	600404		열생산설비	600902
	발전 운영/감시/진단평가 기술	600405		열사용설비 및 공정 기술	6009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력발전	600406		열병합 관련 기술	600904
스마트그리드	대용량 전력수송 기술	600501		에너지다소비 동력/전기기기 기술	600905
	직류 송/배전	600502		고효율 전전화 기술	600906
	송/변/배전시스템 기술	600503		미래형 전기 기술	600907
	전력설비 절연/진단기술	600504		수송시스템 고효율 친환경 전환 관련기술	600908
	전력용 신소재	600505		수송시스템 전기자동차(xEV) 관련기술	600909
	전력전자 기술	600506		수송시스템 인프라 관련기술	600910
	전력망 설계·운영·해석	600507		건물부하저감 설비기술	600911
	전력 수요예측/관리 및 전력시장 운영기술	600508		건물부하저감 융합기술	600912
	IT 기반 전력서비스	600509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600913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600510		에너지 네트워크	600914
	전자계 환경 기술	600511		수요 유연화 기술	600915
	공통 기반	600512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효율향상	600916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마트그리드	600513	에너지저장장치	전기화학저장	601001
원자력	원자로 노심기술	600701		기계식저장	601002
	원자로 계통/핵심기기 기술	600702		열저장	601003
	원자력 계측/제어 기술	6007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저장장치	601004
	원자력 안전기술	600704	에너지안전	가스(수소)안전기술	601101
	핵연료/원자력 소재	600705		전기안전기술	601102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600706		에너지저장장치안전기술	601103
	방사선 기술	600707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 안전	601104
	원자력 시설 제작 및 건설	600708			
	원자력 시설 운영 및 해체복원	600709			
	신원전 및 핵융합	600710			
	원자력 활용기술	600711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600712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태양전지	600801			
	태양광-모듈 • 시스템	600802			
	태양광-유지보수 • 재활용	600803			
	풍력-풍력시스템	600804			
	풍력-풍력단지	600805			
	풍력-운전/유지보수	600806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구분	중분류	소분류	구분
경영・마케팅 전략 서비스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	700101	제조·엔지니어링 서비스	설계 서비스	700501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서비스	700102		생산관리/계량분석 서비스	700502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서비스	700103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서비스	700503
	기술사업화/가치평가서비스	700104		제품품질관리서비스	700504
	지식창출/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105		시험/검사/분석/품질관리서비스	700505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6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506
	시장조사/마케팅관리서비스	700107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서비스	700507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서비스	700108		제조플랫폼 서비스	700508
	지능형 고객관리서비스	700109		기타제조지원서비스	700509
	기타경영・마케팅전략서비스기술	700110	제조부가 서비스	제품 운영관리/모니터링서비스	700601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700201		제품 유지/보수/운영관리서비스	700602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202		제품 임대/대여/렌탈서비스	700603
	전자무역서비스	700203		제품 구독서비스	700604
	기타금융・무역서비스	700204		기업물류지원서비스	700605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유통물류서비스	700606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기타제조부가서비스	700607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제조융합 서비스	수송융합신서비스	700701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에너지 융합신서비스	700702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보건의료융합신서비스	700703
디자인/콘텐츠 서비스	제품/산업공예/포장디자인	700401		생활융합신서비스	700704
	디지털그래픽디자인	700402		교육융합신서비스	700705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00403		컨텐츠융합신서비스	700706
	공간/환경디자인	700404		안전융합신서비스	700707
	서비스디자인	700405		기타제조융합서비스	700708
	감성/UI/UX디자인	700406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700407			
	기타디자인/콘텐츠서비스	700408			

<대분류: 세라믹>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광전자 소재	유전체소재	800101	나노·융복합 소재	저차원나노소재	800501
	압전체소재	800102		나노하이브리드소재	800502
	반도성세라믹	800103		나노잉크소재	800503
	자성소재	800104		탄소복합재료	800504
	광/단결정소재	800105		세라믹섬유	800505
	초전도소재	800106		기타나노·융복합소재	800506
	절연소재	800107	산업기반·기초 세라믹	도자기·타일·벽돌	800601
	센서소재	800108		내화물·단열재·법랑	800602
	기타 광전자소재	800109		시멘트·콘크리트	800603
에너지·환경소재	에너지저장소재	800201		유리·유리가공	800604
	에너지변환소재	800202		연마·연삭제	800605
	분리기능소재	800203		기타 생활세라믹	800606
	유해성분 제거 기능소재	800204	세라믹 공정 기술	분체 및 원료합성기술	800701
	재활용기능성소재	800205		성형·가공기술	800702
	기타 에너지·환경소재	800206		소성기술	800703
기계·구조 소재	내열소재	800301		부품 및 패키징 기술	800704
	구조소재	800302		박막 및 코팅기술	800705
	극한환경소재	800303		평가기술	800706
	기계가공성소재	800304		기타 세라믹공정기술	800707
	기타 기계·구조소재	800305			
바이오 소재	조직재생 소재	800401			
	체외진단 소재	800402			
	바이오매스분리공정소재	800403			
	기능성화장품소재기술	800404			
	기타 바이오소재	800405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제16조 관련)(변경 후)

<대분류: 기계 · 로봇>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정밀 제조 장비	절삭 가공기계	A100101	로봇/ 자동화 기계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A100401
	연삭/연마 가공기계	A100102		제조업용 로봇	A1004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A100103		일반 산업 기계 자동화 기술	A1004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A100104		로봇/자동화 부품 및 SW	A100404
	수치제어장치	A100105		전문 서비스용 로봇	A100405
	금속 성형 기계	A100106		개인 서비스용 로봇	A100406
	사출 성형 기계	A100107		로봇시스템 통합 기술	A100407
	CAD/CAM 관련 SW	A100108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기술	A100408
	정밀제조장비 관련 IT/SW	A100109	산업 기계	농업기계	A100501
	AI기반 자율제조	A100110		인쇄기계	A100502
	디지털 적층기계(3D)	A100111		섬유/제지기계	A100503
	기타 공작 기계	A100112		세척 및 포장기계	A100504
	기타 정밀제조장비 관련 기술	A100113		건설/광산기계	A100505
에너지/ 환경기계 시스템	산업용 공기조화/냉동기계 및 IBS 기술	A100201		재난재해 특수기계	A100506
	산업용 보일러, 오븐, 버너 및 로 설비	A100202		운송하역기계	A100507
	펌프, 압축기 및 송풍기	A100203		산업기계관련 SW	A100508
	수처리 설비	A100204		기타 산업기계 관련 기술	A100509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설비	A100205	나노・ 마이크로 기계 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A100601
	대기오염 방지 설비	A100206		초소형 구동장치	A100602
	건조/농축 설비	A100207		초소형 디바이스	A100603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제어 및 IT/SW 기술	A100208		나노/마이크로 가공/조립 기술	A100604
	증기/가스 터빈	A100209		시스템 신뢰성 평가기술	A100605
	산업용 히트펌프 및 열교환기 관련 기술	A100210		시스템 통합/집적화 기술	A100606
	탄소포집활용 및 미활용열원 활용 관련 기술	A100211		관련 IT/SW	A100607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기술	A100212		나노/마이크로 소재 제조장비	A100608
요소/ 부품	체결용 부품 및 기술	A100301		나노/마이크로 측정분석장비	A100609
	전동용 부품 및 기술	A100302		기타 나노·마이크로 기계 시스템 관련 기술	A100610
	완충/제동용 부품 및 기술	A100303	청정 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A100701
	회전축용 부품 및 기술	A100304		공정 개선 및 생산 관리 기술	A100702
	배관용 부품 및 기술	A100305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A100703
	유공압 부품	A100306		친환경 제품 설계 및 제조기술	A100704
	액츄에이터	A100307		자원재활용 기술	A100705
	절삭/연삭공구	A100308		청정생산 공정 제어 및 IT・SW 기술	A100706
	금형	A100309		공정 설비 디지털 트윈 기술	A100707
	요소/부품 관련 SW	A100310		기타 청정 생산 관련 기술	A100708
	기타 요소/부품	A100311			

<대분류: 모빌리티>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차량 공통	구동시스템 기술	B200101	스마트 조선소	지능형 CAD	B200601
	전기 및 전자장치	B200102		설계 협업 및 관리 기술	B200602
	차체/섀시 및 소재 경량화 기술	B200103		생산 데이터 수집/관리 기술	B200603
	차량 공통 공조 및 열관리 기술	B200104		자동화 용접/도장 기술	B200604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B200105		자율 이송(물류) 기술	B200605
	안전도 향상기술	B200106		생산 디지털 트윈 기술	B200606
	기타 차량 공통 기술	B200107		지능형 검사 기술	B200607
친환경 차량	전력변환시스템 기술	B200201		지능형 생산 계획/관리 기술	B200608
	배터리시스템 기술	B200202		지능형 물류/조달 계획 기술	B200609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B200203		조선소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B200610
	수소저장시스템 기술	B200204		기타 스마트 조선소 기술	B200611
	전기/수소 충전기술	B200205	항공기	유인항공기(고정익/회전익/AAM) 기체	B200701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B200206		유인항공기(고정익/회전익/AAM) 동력장치	B200702
	기타 친환경 차량 기술	B200207		유인항공기(고정익/회전익/AAM) 기계시스템	B200703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스마트이동체 안전도 향상기술	B200301		무인항공기(고정익/회전익/수직이착륙) 기체	B200704
	차량 지능형 센서 및 부품 기술	B200302		무인항공기(고정익/회전익/수직이착륙) 동력장치	B200705
	자율주행 알고리즘 기술	B200303		무인항공기(고정익/회전익/수직이착륙) 기계시스템	B200706
	자율주행 시스템 통합기술	B200304	항공 시스템	유/무인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및 SW	B200801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기술	B200305		항공 AI 기술 및 데이터 시스템	B200802
	자율주행/스마트이동체 SW 기술	B200306		항공 지상설비 시스템	B200803
	자율주행/스마트이동체 HW 기술	B200307		기타 항공 시스템 관련 기술	B200804
	자율주행 평가/검증 기술	B200308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B200901
	기타 자율주행 차량 기술	B200309		우주 발사체 추진시스템 (액체, 고체, 하이브리드 등)	B200902
철도 차량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B200401			
	철도 시스템 통합기술	B200402		우주 발사체 구조 및 시스템	B200903
	기타 철도 차량 기술	B200403		우주 탐사 시스템	B200904
친환경/ 스마트 선박기술	선박소재/구조기술	B200501	우주 시스템	우주시스템 전기전자시스템 및 SW	B2010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B200502		우주 AI 기술 및 데이터 시스템	B201002
	친환경 추진시스템	B200503		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B201003
	에너지효율향상/배출가스 저감 기술	B200504		기타 우주 시스템 관련 기술	B201004
	친환경 에너지 운송 기술	B200505			
	지능형 항해시스템	B200506			
	기관 자동화 기술	B200507			
	자율운항선박 운용/관제/검증 기술	B200508			
	조선/해양시스템관련 IT・SW	B200509			
	친환경해양플랜트	B200510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B200511			
	기타 친환경/스마트 선박기술	B200512			

<대분류: 전기 · 전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광응용 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C300101	영상/ 음향기기	TV 및 스마트 영상기기	C300601
	레이저 가공기	C300102		실감 미디어 기기	C300602
	결상기기	C300103		원격 커뮤니케이션 기기	C300603
	광계측·제어기기	C300104		카메라 및 영상촬영 기기	C300604
	광원	C300105		디지털홍보기기	C300605
	광소재	C300106		모빌리티용 멀티미디어 기기	C300606
	광부품	C300107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C300607
	광소자	C300108		인식 및 재생기기	C300608
	기타 광응용기기	C300109		영상음향 기반 응용기기	C300609
중전기기	발전기 및 전동기	C300201		기타 영상/음향기기	C300610
	제어기 및 전력변환기기(인버터/컨버터)	C300202	전지	전지재료	C300701
	전력용 재료 및 부품	C300203		제조공정 기술 및 장비	C300702
	변압기류	C300204		측정평가 기술 및 장비	C300703
	개폐기류	C300205		응용 및 활용 기술(EV,ESS 등)	C300704
	송배전 운영 및 보호/감시장치	C300206		일차전지	C300705
	자동화기기 및 정보통신장치	C300207		이차전지	C300706
	전기로	C300208		초고용량 커패시터	C300707
	전선 및 케이블	C300209		기타 전지	C300708
	초전도 기기	C300210	디스플레이 패널	LCD	C300801
	전기용접 및 가열	C300211		OLED	C300802
	전원장치 및 충전기	C300212		ILED(마이크로, 나노LED, QD 등)	C300803
	에너지저장기기	C300213		E-Paper	C300804
	기타중전기기	C300214		3D	C300805
전기전자 부품	센서 부품	C300301		기타 디스플레이	C300806
	PCB 부품	C300302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디스플레이 발광소재	C300901
	커패시터 부품	C300303		디스플레이 광학소재	C300902
	자성재료 부품	C300304		디스플레이 부품 및 기타 소재	C300903
	기록매체 부품	C300305		디스플레이 노광/트랙 장비 및 부품	C300904
	복합 부품	C300306		디스플레이 코팅/프린팅/열처리 장비 및 부품	C300905
	초고주파 발생소자	C300307		디스플레이 에칭/증착 장비 및 부품	C300906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C300308		디스플레이 전사/접합 장비 및 부품	C300907
	기타 전기전자부품	C300309		디스플레이 측정/검사/리페어 장비 및 부품	C300908
가전용기기 및 전자응용 기기	정보가전기기	C300401		기타 소재·부품·장비(기타장비 부분품 포함)	C300909
	영상 및 음성정보 응용기기	C300402	양자	양자컴퓨팅 HW	C301001
	조명기기	C300403		양자컴퓨팅 SW	C301002
	소형가전	C300404		양자통신	C301003
	백색 생활가전	C300405		양자센싱	C301004
	냉·난방기기	C300406		양자소재부품	C301005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C300407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C300501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C300502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C300503			
	환경계측기	C300504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C300505			
	유체 제어계측기	C300506			
	전자 계측기	C300507			
	광계측기	C300508			
	기타 계측기기	C300509			

<대분류: 반도체>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반도체 장비	열처리장비	D400101			
	노광・트랙장비	D400102			
	에칭 장비	D400103			
	폴리싱(CMP)장비	D400104			
	증착장비	D400105			
	이온주입장비	D400106			
	세정장비	D400107			
	패키징장비	D400108			
	측정/검사 장비	D400109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D400110			
	테스트장비	D400111			
	기타 반도체장비	D400112			
반도체 소재 및 소자	Si 소자	D400201			
	화합물 소자	D400202			
	MEMS 소자	D400203			
	Sensor용 소자	D400204			
	반도체 소재	D400205			
	기타 반도체 소자	D400206			
시스템 반도체	SoC	D400301			
	메모리융합 반도체	D400302			
	프로세서・로직 반도체	D400303			
	아날로그・혼성신호 반도체	D400304			
	설계 Tool	D400305			
	기타 시스템 반도체	D400306			

<대분류: AI·정보통신>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인공지능	인지・생성 AI	E500101	RFID/ USN	RFID기술	E500701
	효율・학습 AI	E500102		IoT 센서 네트워크 기술	E500702
	신뢰・공정 AI	E500103		근거리・모바일 식별 기술	E500703
	활용・지원 AI	E500104		IoT 플랫폼・데이터 처리 기술	E500704
	빅데이터 처리・유통	E500105		RFID/USN 산업응용 서비스	E500705
	빅데이터 분석・활용	E500106		기타 RFID/USN 기술	E500706
	기타 인공지능	E500107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E500801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E500201		클라우드/엣지 서버 기술	E500802
	이동통신 시스템	E500202		AI 기반 클라우드/엣지 자원 관리 기술	E500803
	이동통신 단말기	E500203		기타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기술	E500804
	기타 이동통신기기	E500204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지능형 임베디드 SW	E500901
	기타 이동통신 기술	E500205		서비스형 SW 및 솔루션	E500902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및 플랫폼	E500301		System Integration	E500903
	지상파 디지털 방송	E500302		웹/모바일 기반 SW	E500904
	위성 디지털 방송	E500303		AI 응용 소프트웨어	E500905
	케이블 디지털 방송	E500304		기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술	E500906
	이동방송	E500305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스	E501001
	디지털 방송 콘텐츠	E500306		가상・증강・혼합현실	E501002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E500307		홀로그램	E501003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E500308		콘텐츠 창작・제작 및 기획	E501004
	디지털 방송 단말	E500309		콘텐츠 저작권	E501005
	디지털 방송 송수신 장비	E500310		콘텐츠 관리 및 유통	E501006
	디지털 방송 신호처리 및 압축 기술	E500311		게임 및 이스포츠	E501007
	기타 디지털방송 기술	E500312		u-러닝 및 e-러닝	E501008
위성- 전파	위성통신・방송 전송	E500401	지식정보 보안	정보보안	E501101
	위성통신・방송 단말	E500402		물리보안	E501102
	위성항법	E500403		융합보안	E501103
	탑재체 및 관제	E500404		인공지능 보안	E501104
	EMI/EMC	E500405		기타 지식정보보안 기술	E501105
	전자파기기	E500406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E501201
	전자파 진단 및 방호	E500407		위성・방송 모듈 및 부품	E501202
	기타 위성・전파 기술	E500408		광통신모듈및부품	E501203
홈 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E500501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E501204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E500502		기타 정보통신 모듈/부품 기술	E501205
	홈 AI가전	E500503	ITS	ITS 단말 및 기기	E501301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E500504		V2X 단말 및 기기	E501302
	홈 보안 및 안전서비스	E500505		C-ITS 단말 및 기기	E501303
	기타 홈 네트워크 기술	E500506		커넥티드카 서비스	E501304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E500601		AI・클라우드 등 기타 단말 및 기기	E501305
	전달망	E500602		기타 ITS 기술	E501306
	가입자망	E500603			
	망 운영・관리・자동화	E500604			
	엣지・분산형 네트워크	E500605			
	양자암호네트워크 등 기타 네트워크	E500606			
	기타 광대역 통합망 기술	E500607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F600101	대기/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F600501
	의약제제	F600102		대기오염 방지기술	F600502
	농약 중간체/원제	F600103		대기/폐기물 환경설비기술	F600503
	농약제제	F600104		대기/폐기물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F600504
	염/안료 및 중간체	F600105		기상장비산업기술	F600505
	계면활성제	F600106		기상서비스산업기술	F600506
	윤활유	F600107		기타 대기/폐기물 환경산업기술	F600507
	첨가제	F600108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F600601
	도료/코팅제	F600109		토양오염 방지기술	F600602
	접착제/실란트	F600110		해양오염 방지기술	F600603
	유·무기재료 및 촉매 기술	F600111		수질/토양 환경설비 기술	F600604
	감광재료	F600112		수질/토양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F600605
	화장품/소재	F600113		기타 수질/토양 환경산업기술	F600606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F600114	섬유재료	천연섬유	F600701
	나노응용기술	F600115		합성섬유	F600702
	기타 합성응용제품	F600116		바이오섬유	F600703
고분자 재료	고분자 중합/개질기술	F600201		재생섬유	F600704
	고분자 복합재료제조기술	F600202		슈퍼섬유	F600705
	전기·전자정보용 고분자 소재기술	F600203		나노섬유	F600706
	의료용 고분자 소재기술	F600204		기타 섬유재료 및 부자재	F600707
	에너지·환경산업용 고분자 소재기술	F600205	섬유공정	중합·개질기술	F600801
	특수기능성 고분자 소재기술	F600206		제사·사가공기술	F600802
	고분자 재활용기술	F600207		제·편직기술	F600803
	고분자가공기술	F600208		부직포기술	F600804
	고분자나노소재기술	F600209		디자인·봉제기술	F600805
	생분해성 고분자 기술	F600210		염색기술	F600806
	기타 고분자 재료	F600211		섬유가공기술	F600807
화학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F600301		섬유강화 복합재료 기술	F600808
	촉매 응용기술	F600302		섬유제조설비	F600809
	공정시스템기술	F600303		기타 섬유공정기술	F600810
	공정설비기술	F600304	섬유제품	의류패션제품	F600901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F600305		생활용 섬유제품	F600902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F600306		산업용 섬유제품	F600903
	기타 화학공정	F600307		나노섬유제품	F600904
화학제품	제지	F600401		융합섬유제품	F600905
	인조피혁	F600402		섬유제품 관련 IT·SW	F600906
	천연피혁	F600403		기타 섬유제품	F600907
	고무(타이어포함)	F600404			
	기타 화학제품	F600405			

<대분류: 바이오 · 의료>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의약 바이오	단백질의약품	G700101	그린 바이오	식물공장 활용기술	G700401
	항체의약품	G700102		형질전환생물체	G700402
	백신	G700103		친환경작물보호제	G700403
	균주/효소의약품	G700104		미생물작물보호제	G700404
	바이오인공장기	G700105		AI기반 그린바이오 제조생산 기술	G700405
	세포치료제	G700106		배양식품 제품/기술	G700406
	유전자치료제	G700107		마이크로바이옴 제품/기술	G700407
	원료의약품	G700108		기타 그린바이오 제품/기술	G700408
	천연물의약품	G700109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G700501
	약효 및 안전성 평가기술	G700110		방사선치료기	G700502
	시약/진단체	G700111		수술용 의료기기	G700503
	바이오생체소재/제품	G700112		한방용 의료기기	G700504
	GMP 생산기반기술	G700113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G700505
	조직치료제	G700114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G700506
	합성의약품	G700115		체외진단기기	G700507
	펩타이트의약품	G700116		초음파 의료기기	G700508
	AI 신약발굴·평가기술	G700117		의료 영상 진단기기	G700509
	AI 비임상·임상기술	G700118		지능형 의료 로봇	G700510
	AI 제형·제조·생산기술	G700119		광 의료기기	G700511
	기타 의약바이오 제품/기술	G700120		의료용 가상융합기기	G700512
산업 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및 제품	G700201		기타 의료 영상기기	G700513
	바이오플라스틱 및 제품	G700202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G700514
	바이오화학촉매기술	G700203	기능복원/ 재활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G700601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G700204		임플란트	G700602
	기능성 화장품소재 및 제품	G700205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G700603
	기능성 식품소재 및 제품	G700206		생체재료/기기	G700604
	바이오환경	G700207		의료용 소재	G700605
	바이오매스	G700208		AI·로봇 기반 재활 및 보조 기기	G700606
	인증 및 평가기술	G700209		이동 지원기기 및 시스템	G700607
	바이오화학공정기술 및 기기	G700210		생활/건강 지원기기 및 시스템	G700608
	AI 소재설계·성능예측기술	G700211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G700609
	기타 산업바이오제품/기술	G700212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G700610
융합 바이오	바이오공정기술	G700301	의료정보 및 시스템	비대면 의료지원 시스템	G700701
	바이오진단기술/기기	G700302		비대면 의료용 모니터링 시스템	G700702
	바이오분석기술/기기	G700303		AI 의료 운영지원 플랫폼	G700703
	바이오 진단 및 분석 기기/소재	G700304		의료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시스템	G700704
	바이오마커 기반기술	G700305		AI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	G700705
	AI 바이오데이터 분석 기술/기기	G700306		기타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G700706
	AI 바이오닉스 기술/기기	G700307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G700707
	기타 융합바이오 제품/기술	G700308			

<대분류: 에너지 · 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포집기술	H800101	신재생에너지	수소-제조	H800707
	이산화탄소활용(전환)기술	H800102		수소-이송 및 저장	H800708
	이산화탄소저장기술	H800103		수소-인프라 구축	H800709
	비이산화탄소관리기술	H800104		연료전지-이동형	H8007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온실가스	H800105		연료전지-고정형	H800711
자원개발	석유가스	H800201		연료전지-기타	H800712
	광물자원	H800202		태양열	H800713
	광해관리	H800203		바이오	H8007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원개발	H800204		폐기물	H800715
자원순환	무기계자원회수	H800301		수력	H800716
	유기계자원회수	H800302		해양	H800717
	재제조	H800303		지열	H8007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원순환	H800304		청정연료	H800719
화력발전	석탄/가스화 발전기술	H800401		수열	H800720
	가스터빈 발전기술	H800402		달리 구분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H800721
	무탄소 발전기술	H800403	에너지효율향상	히트펌프	H800801
	발전 환경 청정화 기술	H800404		열생산설비	H800802
	발전 운영/감시/진단평가 기술	H800405		열사용설비 및 공정 기술	H8008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력발전	H800406		열병합 관련 기술	H800804
스마트그리드	대용량 전력수송 기술	H800501		에너지다소비 동력/전기기기 기술	H800805
	직류 송/배전	H800502		고효율 전전화 기술	H800806
	송/변/배전시스템 기술	H800503		미래형 전기 기술	H800807
	전력설비 절연/진단기술	H800504		수송시스템 고효율 친환경 전환 관련기술	H800808
	전력용 신소재	H800505		수송시스템 전기자동차(xEV) 관련기술	H800809
	전력전자 기술	H800506		수송시스템 인프라 관련기술	H800810
	전력망 설계·운영·해석	H800507		건물부하저감 설비기술	H800811
	전력 수요예측/관리 및 전력시장 운영기술	H800508		건물부하저감 융합기술	H800812
	IT 기반 전력서비스	H800509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H800813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H800510		에너지 네트워크	H800814
	전자계 환경 기술	H800511		수요 유연화 기술	H800815
	공통 기반	H800512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효율향상	H800816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마트그리드	H800513	에너지저장장치	전기화학저장	H800901
원자력	원자로 노심기술	H800601		기계식저장	H800902
	원자로 계통/핵심기기 기술	H800602		열저장	H800903
	원자력 계측/제어 기술	H8006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저장장치	H800904
	원자력 안전기술	H800604	에너지안전	가스(수소)안전기술	H801001
	핵연료/원자력 소재	H800605		전기안전기술	H801002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H800606		에너지저장장치안전기술	H801003
	방사선 기술	H800607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 안전	H801004
	원자력 시설 제작 및 건설	H800608			
	원자력 시설 운영 및 해체복원	H800609			
	신원전 및 핵융합	H800610			
	원자력 활용기술	H800611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H800612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태양전지	H800701			
	태양광-모듈·시스템	H800702			
	태양광-유지보수·재활용	H800703			
	풍력-풍력시스템	H800704			
	풍력-풍력단지	H800705			
	풍력-운전/유지보수	H800706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경영・마케팅・전략 서비스	기업 의사결정・경영전략 지원 서비스	I900101	융합형 신산업 서비스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I900701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서비스	I900102		에너지・환경 융합 서비스	I900702
	기술사업화・가치평가 서비스	I900103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I900703
	지식재산 전략 서비스	I900104		지능형 안전・재난 대응 서비스	I900704
	인사・법무・회계지원 서비스	I900105		우주・항공・방위산업 서비스	I900705
	시장조사・마케팅 전략 서비스	I900106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I900706
	디지털 기반 고객전략 서비스	I900107		기타 융복합 산업 서비스	I900707
	지속가능경영・ESG 전략 서비스	I900108	융합 제품화 디자인	설계・제조・생산 공정 디자인기술	I900801
	공급망 리스크 대응 서비스	I900109		소재・칼라 디자인기술	I900802
	디지털 금융 서비스	I900110		지기구조 디자인기술	I900803
	자산운용・위험관리 서비스	I900111		그래픽・디지털 구현 디자인기술	I900804
	기타 경영・마케팅・전략서비스	I900112		사용자경험 디자인기술	I900805
교육・인적자원 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 서비스	I900201		기타 융합 제품화 디자인기술	I900806
	감성・인지능력 강화 서비스	I900202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기술	I900901
	직무수행능력 향상 서비스	I900203		안전・안심 디자인기술	I900902
	디지털 교육플랫폼 서비스	I900204		지속 가능 디자인기술	I900903
	기타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I900205		공공・복지 디자인기술	I900904
제조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제품・공정・설비 설계 기술	I900301		기타 서비스디자인기술	I900905
	디지털 기반 설계 검증・최적화 기술	I900302			
	친환경 공정설계 지원 기술	I900303			
제조 공정 최적화 서비스	지능형 공정 제어・관리 기술	I900401			
	제조 플랫폼 기술	I900402			
	제품・설비 운영 모니터링 기술	I900403			
	기타 공정 운영 지원 기술	I900404			
품질・유지보수 서비스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인증 기술	I900501			
	품질진단 시험・검사・분석 기술	I900502			
	지능형 설비 예지・예방보전 기술	I900503			
물류 및 제조 지원 서비스	지능형 제조 현장 물류 서비스	I900601			
	데이터 기반 유통물류 서비스	I900602			
	친환경 순환 포장・물류 서비스	I900603			
	제조 운영지원 통합 서비스	I900604			
	디지털 물류 플랫폼 서비스	I900605			

<대분류: 금속·세라믹>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철강	철강 원료 고품위화 기술 * 철광석, 철스크랩, 직접환원철, 합금철 등	J000101
	철강 제선, 제강 및 정련 기술	J000102
	중후판 및 열연·냉연 판재	J000103
	봉형강, 철근 및 선재류	J000104
	용접강관 및 무계목강관류	J000105
	주단강 및 특수강	J000106
	철강 공정 부산물 재자원화 기술	J000107
	기타 철강 기술	J000108
비철금속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스크랩 회수·재자원화 기술	J000201
	구리 및 구리합금	J00020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J000203
	아연·연 및 아연·연합금	J000204
	주석 및 주석합금	J000205
	니켈 및 니켈합금	J000206
	비철금속 공정 부산물 재자원화 기술	J000207
	기타 비철금속 기술	J000208
희소금속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J000301
	고융점 희소금속 및 합금	J000302
	희토류 금속 및 희토류계 소재	J000303
	백금족 금속 및 백금족계 소재	J000304
	철·보론족 희소금속 및 소재	J000305
	반금속 및 알칼리 희소금속 소재	J000306
	희소금속 제련·정련 및 재자원화 기술	J000307
	기타 희소금속 기술	J000308
주조/용접	고정밀주조 및 다이케스팅 기술	J000401
	특수합금 및 이종소재 기술	J000402
	첨단용접 및 접합 공정 기술	J000403
	주조/용접 후처리 및 품질 기술	J000404
	AI지능형 주조 용접시스템	J000405
	기타 주조용접 관련 기술	J000406
성형/제조	첨단 소성가공 기술	J000501
	분말 소재 및 부품제조 기술	J000502
	지능형 성형/적층공정 시스템	J000503
	하이브리드성형 기술	J000504
	적층제조(AM) 기술	J000505
	기타 성형/제조 관련 기술	J000506
표면/열처리	첨단 열처리 기술	J000601
	기능성표면처리 기술	J000602
	고기능필름 및 코팅 기술	J000603
	표면 물성 개질 기술	J000604
	지능형 표면/열처리 시스템	J000605
	기타 표면/열처리 관련 기술	J000606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광전자 세라믹 소재	유전체소재	J000701
	압전체 소재	J000702
	반도성세라믹소재	J000703
	자성소재	J000704
	광/단결정소재	J000705
	초전도소재	J000706
	절연소재	J000707
	센서소재	J000708
	양자 세라믹 소재	J000709
	기타 광전자소재	J000710
에너지·환경 세라믹 소재	에너지저장소재	J000801
	에너지변환소재	J000802
	분리기능소재	J000803
	유해성분 제거 기능소재	J000804
	재활용기능성소재	J000805
	기타 에너지·환경소재	J000806
구조 세라믹 소재	열기능소재	J000901
	구조소재	J000902
	극한환경소재	J000903
	기계가공성소재	J000904
	기타 기계·구조소재	J000905
바이오 세라믹 소재	조직재생 소재	J001001
	체외진단 소재	J001002
	바이오매스분리공정소재	J001003
	기능성화장품소재기술	J001004
	기타 바이오소재	J001005
나노·융복합 소재	저차원나노소재	J001101
	나노하이브리드소재	J001102
	나노잉크소재	J001103
	탄소복합재료	J001104
	세라믹섬유	J001105
	기타나노·융복합소재	J001106
산업 기반·기초 세라믹	도자기·타일·벽돌	J001201
	내화물·단열재·법랑	J001202
	시멘트·콘크리트	J001203
	유리·유리가공	J001204
	연마·연삭제	J001205
	기타 산업 기반·기초 세라믹	J001206
세라믹 공정 기술	분체 및 원료합성기술	J001301
	성형·가공기술	J001302
	소성·소결기술	J001303
	부품 및 패키징 기술	J001304
	박막 및 코팅기술	J001305
	평가기술	J001306
	재자원화 기술	J001307
	기타 세라믹공정기술	J001308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변경 전)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유통물류응용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전자무역서비스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기타보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시각디자인기술
	제품품질 관리기술		디지털디자인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서비스디자인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공간/환경디자인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포장디자인기술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UI/UX디자인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기타 디자인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계·소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자동차/철도차량	안전도 향상기술
		차량 지능화 기술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IT·S/W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IT·S/W
	산업/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IT·S/W
	항공/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IT·S/W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IT·S/W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소성가공/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청정생산 관련 IT·SW
전기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oC
		설계 Tool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섬유제품	섬유제품 관련 IT·SW
바이오·의료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공정기술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의료정보표준화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디지털 방송 콘텐츠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서버기술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Internet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콘텐츠 창작 기획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게임 및 u-러닝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ITS/텔레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에너지·자원	스마트그리드	전력망 설계·운영·해석
		전력 수요예측/관리 및 전력시장 운영기술
		IT 기반 전력서비스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원자력	원자로 노심기술
		원자로 계통/핵심기기 기술
		원자력 계측/제어 기술
		원자력 안전기술
		신원전 및 핵융합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변경 후)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마케팅・전략 서비스	기업 의사결정・경영전략 지원 서비스	융합형 신산업 서비스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서비스		에너지・환경 융합 서비스
	기술사업화・가치평가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지식재산 전략 서비스		지능형 안전・재난 대응 서비스
	인사・법무・회계지원 서비스		우주・항공・방위산업 서비스
	시장조사・마케팅 전략 서비스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디지털 기반 고객전략 서비스		기타 융복합 산업 서비스
	지속가능경영・ESG 전략 서비스	융합 제품화 디자인	설계・제조・생산 공정 디자인기술
	공급망 리스크 대응 서비스		소재・칼라 디자인기술
	디지털 금융 서비스		지기구조 디자인기술
	자산운용・위험관리 서비스		그래픽・디지털 구현 디자인기술
	기타 경영・마케팅・전략서비스		사용자경험 디자인기술
교육・인적자원 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 서비스		기타 융합 제품화 디자인기술
	감성・인지능력 강화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기술
	직무수행능력 향상 서비스		안전・안심 디자인기술
	디지털 교육플랫폼 서비스		지속 가능 디자인기술
	기타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공공・복지 디자인기술
제조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제품・공정・설비 설계 기술		기타 서비스디자인기술
	디지털 기반 설계 검증・최적화 기술		
	친환경 공정설계 지원 기술		
제조 공정 최적화 서비스	지능형 공정 제어・관리 기술		
	제조 플랫폼 기술		
	제품・설비 운영 모니터링 기술		
	기타 공정 운영 지원 기술		
품질・유지보수 서비스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인증 기술		
	품질진단 시험・검사・분석 기술		
	지능형 설비 예지・예방보전 기술		
물류 및 제조 지원 서비스	지능형 제조 현장 물류 서비스		
	데이터 기반 유통물류 서비스		
	친환경 순환 포장・물류 서비스		
	제조 운영지원 통합 서비스		
	디지털 물류 플랫폼 서비스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계·로봇	정밀제조장비	CAD/CAM 관련 SW
		정밀제조장비 관련 IT/SW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제어 및 IT/SW 기술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제어 및 지능화 기술
		로봇/자동화 부품 및 SW
	산업기계	산업기계관련 SW
	나노·마이크로 기계 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 시스템 관련 SW
	청정생산	친환경 제품 설계 및 제조기술
		청정생산 공정 제어 및 IT·SW 기술
모빌리티	차량공통	안전도 향상기술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스마트이동체 안전도 향상기술
		차량 지능형 센서 및 부품 기술
		자율주행 알고리즘 기술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기술
		자율주행/스마트이동체 SW기술
	친환경/스마트 선박기술	지능형 항해시스템
		기관 자동화 기술
		자율운항선박 운용/관제/검증 기술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IT·SW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모빌리티	스마트 조선소	지능형 CAD
		설계 협업 및 관리 기술
		생산 데이터 수집/관리 기술
		자동화 용접/도장 기술
		자율 이송(물류) 기술
		생산 디지털 트윈 기술
		지능형 검사 기술
		지능형 생산 계획/관리기술
		지능형 물류/조달 계획 기술
		조선소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기타 스마트 조선소 기술
	항공 시스템	유/무인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및 SW
		항공 AI 기술 및 데이터 시스템
	우주 시스템	우주 시스템 전기전자시스템 및 SW
		우주 AI 기술 및 데이터 시스템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디스플레이 노광/트랙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 측정/검사/리페어 장비 및 부품
	양자	양자컴퓨팅 SW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SoC
		설계 Tool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섬유제품	섬유제품 관련 IT·SW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바이오·의료	의약바이오	AI 신약발굴·평가기술
		AI 비임상·임상기술
		AI 제형·제조·생산기술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공정기술 및 기기
		AI 소재설계·성능예측기술
	그린바이오	AI기반 그린바이오 제조생산 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비대면 의료지원 시스템
		비대면 의료용 모니터링 시스템
		AI 의료 운영지원 플랫폼
		의료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시스템
		AI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기타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AI·정보통신	인공지능	인지·생성 AI
		효율·학습 AI
		신뢰·공정 AI
		활용·지원 AI
		빅데이터 처리·유통
		빅데이터 분석·활용
		기타 인공지능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및 플랫폼
		디지털 방송 콘텐츠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홈네트워크	홈 AI 가전
		홈 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홈 보안 및 안전서비스
	RFID/USN	RFID/USN 산업응용 서비스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클라우드/엣지 서버 기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AI·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지능형 임베디드 SW
		서비스형 SW 및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웹/모바일 기반 SW
		AI 응용 소프트웨어
		기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술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스
		가상·증강·혼합현실
		콘텐츠 창작·제작 및 기획
		콘텐츠 저작권
		콘텐츠 관리 및 유통
		U-러닝 및 e-러닝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인공지능 보안
		기타 지식정보보안 기술
	ITS	C-ITS 단말 및 기기
		커넥티드카 서비스
에너지·자원	스마트그리드	전력망 설계·운영·해석
		전력 수요예측/관리 및 전력 시장 운영기술
		IT 기반 전력서비스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원자력	원자로 노심기술
		원자로 계통/핵심기기 기술
		원자력 계측/제어 기술
		원자력 안전기술
		신원전 및 핵융합
금속·세라믹	주조/용접	AI 지능형 주조용접시스템
	소성가공/분말	지능형 성형/적층공정 시스템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변경 전)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동안 내부·외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나.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내부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겸직 포함)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외부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다음 각목 해당하는 연구자 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타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나.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타교 학생 다.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실습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라. 프리랜서 ㅇ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지원전담조직 등을 제외한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나.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	ㅇ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 (월별 해당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의 총합 ÷ 12)* * 정부출연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은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연도의 연평균을 적용(학생연구자는 그 외 기관 기준을 따름)하며, 그 외 기관은 인건비계상률을 월단위로 적용 ㅇ 급여총액 기준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급여총액에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음 ** 해당기관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라도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한 급여총액 산정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무 시 해당 금액은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함 · (개인사업자인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에 따라 산정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 (프리랜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실습연구자)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중소·중견기업의 참여연구자로 참여시킬 경우 대학생의 경우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며,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은 학생인건비 기준금액 이상으로 해당 기업이 정한 금액으로 산정 가능하며 [서식 제1호]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인건비계상률 기준 - 원칙 : 인건비계상률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

구분		내용
		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 제57조에서 정한「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 이내에서 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 비영리기관 중 급여총액에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계상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 \text{인건비계상률} = \left(\frac{\text{해당연(월)참여연구자 지급급여(4대보험본인부담포함)}}{\text{해당연(월)급여총액}}\right)$
	현금/현물 계상 기준	ㅇ 원칙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 - 연구개발기업소속의 참여연구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 대학에 소속된「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비영리기관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적용 이외의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계상 ㅇ 단, 다음의 경우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함 -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대학 :「고등교육법」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 외부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 - 영리기관(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가.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나.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다.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4호에 따름 라.「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마.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바.「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아.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구분		내용
		ㅇ 그 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 또는 사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
학생인건비	**사용 용도**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다)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에 따름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산정 기준	ㅇ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참여기간(월)) × (학생인건비계상률(%)) -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학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데 포함하지 않음 가.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나.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다.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ㅇ 직장인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자'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을 0원으로 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서식 제1호] 원 소속기관장의 참여 확인서 상의 학생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를 따르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	ㅇ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ㅇ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계상/산정 기준	ㅇ 원칙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유·임차·사용대차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시설.장비는 현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는 현금 계상 -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사용료)는 계상이 불가하

구분		내용
		며,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사용료)는 계상 가능.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기관 내부 또는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사용 가능. 이 경우 정산시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제출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구입 후 발생한 잔액은 연구시설·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ㅇ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가 가능한 경우(검수완료를 기준으로 함)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 가능. 단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아래 각 목은 예외로 함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1개월 전 -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사용료)를 기준으로 현금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함 .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을 계상 한 경우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0조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은 지정일 이후에 신규로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5% 이내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 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이후 변경은 불가하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정대체 하여야 함 ㅇ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에 대하여 비용 산정 ※ 연구인프라 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이 불가능 ㅇ 구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ㅇ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산정
연구재료비	**사용 용도**	ㅇ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계상/ 산정 기준	ㅇ 원칙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재료비는 현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재료비 구입비는 현금 계상

구분		내용
		- 대학에서 사용한 건당 100만원 이하의 재료비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용 가능(연 1,000만원 한도) ㅇ 연구재료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소요 금액으로 현금 산정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연구개발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원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연구개발기관 보유 시험제품·시험설비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연구개발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제작할 경우 실소요 금액(외부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연구재료 제작비로 계상 - 연구개발기관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할 경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 연구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ㅇ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사용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하며, 이 경우 평가단 승인 혹은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함)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ㅇ 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ㅇ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ㅇ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

구분		내용
		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계상/산정 기준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를 계상하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불가 - 중소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표준화 활동과 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 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참여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창의활동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초과하여 계상 가능 - 전문가활용비는 참여연구자가 아니며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비 등을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 협약(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 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 · (전문가 활용인력이 제한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에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전문가활용은 예외로 계상 가능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자체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전문가 활용인력이 제한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인정 분야> <table><tr><th>유형</th><th>전문가 소속부서</th><th>전문가 활용비 사용가능 여부</th></tr><tr><td rowspan="2">(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A기관 ↔ B기관 소속 전문가</td><td>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td><td>X</td></tr><tr><td>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td><td>O</td></tr><tr><td rowspan="2">(비영리) 연구개발기관 내 전문가 활용 A기관 → A기관 소속 전문가</td><td>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td><td>X</td></tr><tr><td>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td><td>O</td></tr></table> -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구분		내용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된 시험·분석·검사, 안전점검·검사비,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등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연구개발기관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연구개발기관 소속 전문가 등) 사용은 불가 · 연구개발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책정 누락 등 부득이 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내용 중 핵심공정·기술 개발을 제외한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비용으로 계상 ·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비 성격은 계상불가 (단,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 ㅇ (회의비)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부대비용,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관련 비용 계상 불가 - 회의비 중 식비를 RCMS를 통해 등록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전 내부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봄 ㅇ (출장비) 국내외 여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외 출장 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외 여비는 산정 불가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 산정할 수 있으며 월 또는 연단위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도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매 가능(단 비영리기관에 한해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분담하여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 가능)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1개월 전 나. 그 외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2개월 전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구입·임차하였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자체재원으로 구입·임차한 소프트웨어(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외)에 대하여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 계상(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구분		내용
		시작일의 5년 이내여야 하며,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함) ·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준 및 사용기한을 준용함) ㅇ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에 따라 사용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 협약한 경우만 계상 가능.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의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용성 장비 구입을 허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함(개인성용품, 기호용품 등은 계상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임차·사용대차비용을 계상 -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제반되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 · 개인성용품, 기호용품 계상불가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직접 관련 있는 연구환경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으로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계상불가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계상불가 ·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계상불가 ㅇ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과제와 관련없는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은 사용 불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계상불가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계상불가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계상불가 ·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계상불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및「고용보험법」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계상 불가 ·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계상 불가 ㅇ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비용에 대한 종합사업관리비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구분		내용
		ㅇ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ㅇ (그 밖의 비용)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문헌 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 복사,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토대로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34조제6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에 반영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34조제6항각호의 기관에 해당 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산정) -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실증 참여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일단위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정 ㅇ (대학의 연구활동비) 대학에서 사용한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강사수당 제외), 국내출장비, 야근식대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용 가능(직접비의 10% 한도)
연구수당	**사용용도**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연구근접지원인력 등 지원인력은 미해당
	계상/산정기준	ㅇ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단계별 총액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사업 공고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인프라구축, 단순 장비 도입 등)에 따라 연구수당 비율을 수정인건비의 20%보다 낮게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함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수당 총액 이내에서 연차별 인건비 증액 등 부득이 한 경우 연차별 연구수당액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연차별로 연구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연차 마지막 인건비 지급 후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 ㅇ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에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 지급하여야 함 -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정한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학생연구자는 예외) ㅇ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능함 -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ㅇ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미흡 또는 불성실수행일 경우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내용</th></tr>
<tr><td colspan="2"></td><td>
<table>
<tr><th>평가결과</th><th>연구수당</th></tr>
<tr><td>중단(성실)</td><td>중단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에서 50% 감액</td></tr>
<tr><td>중단(불성실)</td><td>중단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미지급</td></tr>
<tr><td>미흡</td><td>최종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에서 50% 감액</td></tr>
<tr><td>불성실수행</td><td>최종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미지급</td></tr>
</table>
</td></tr>
<tr><td rowspan="2">보안
수당</td><td>사용
용도</td><td>ㅇ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td></tr>
<tr><td>계상/
산정
기준</td><td>ㅇ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의 3% 이내로 계상 가능하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함</td></tr>
<tr><td rowspan="2">국제공동
연구개발비</td><td>사용
용도</td><td>ㅇ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전문기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비용</td></tr>
<tr><td>계상/
산정
기준</td><td>ㅇ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또는 외국인) 간 공동연구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좌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당 국외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 사용 시 동 요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td></tr>
<tr><td>간접비</td><td>사용
용도</td><td>ㅇ 인력지원비
1.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4.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5.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ㅇ 연구지원비
1. 비영리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개발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대학의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td></tr>
</table>

구분		내용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비영리기관의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8.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단,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연구실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없음) o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 가능 *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학교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 *** 실험실공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계상/산정 기준	o 간접비비율은 간접비를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로 나눈 값으로서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에 따름(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등을 반영하여 간접비율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음) o 비영리기관

구분		내용
		-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 수행 도중 연구개발기관이 변경 되는 경우, 양도양수 시 정한 시점에 변경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6조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이관하여야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 가능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7조제3항을 준용하여 해당 간접비비율을 적용 ㅇ 영리기관(공기업 포함) -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기관유형별 간접비 사용기준] ㅇ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 가능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한 간접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 간접비 감액 가능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 불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구분		내용
		ㅇ 대학 -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 가능 -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대학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대학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 불가 - 대학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 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계상 -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함 -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동안에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가능함(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변경 후)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동안 내부·외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나.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내부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겸직 포함)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외부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다음 각목 해당하는 연구자 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타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나.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타교 학생 다.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실습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라. 프리랜서 ㅇ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지원전담조직 등을 제외한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나.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	ㅇ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 (월별 해당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의 총합 ÷ 12)* * 정부출연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은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연도의 연평균을 적용(학생연구자는 그 외 기관 기준을 따름)하며, 그 외 기관은 인건비계상률을 월단위로 적용 ㅇ 급여총액 기준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급여총액에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음 ** 해당기관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라도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한 급여총액 산정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무 시 해당 금액은 다른 연구개발비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인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에 따라 산정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 (프리랜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실습연구자)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중소·중견기업의 참여연구자로 참여시킬 경우 대학생의 경우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며,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은 학생인건비 기준금액 이상으로 해당 기업이 정한 금액으로 산정 가능하며 [서식 제1호]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인건비계상률 기준

구분		내용
		- 원칙 : 인건비계상률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 제57조에서 정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 이내에서 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 비영리기관 중 급여총액에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계상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 \text{인건비계상률} = \left(\frac{\text{해당연(월)참여연구자 지급급여(4대보험본인부담포함)}}{\text{해당연(월)급여총액}}\right)$
	현금/현물 계상 기준	ㅇ 원칙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 - 연구개발기업소속의 참여연구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 대학에 소속된「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비영리기관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적용 이외의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계상 ㅇ 단, 다음의 경우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함 -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대학 :「고등교육법」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 외부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 - 영리기관(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가.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나.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다.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름 라.「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마.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바.「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아.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구분		내용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ㅇ 그 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 또는 사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
학생인건비	**사용 용도**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다)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에 따름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산정 기준	ㅇ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참여기간(월)) × (학생인건비계상률(%)) -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학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데 포함하지 않음 가.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나.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다.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ㅇ 직장인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자'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을 0원으로 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서식 제1호] 원 소속기관장의 참여 확인서 상의 학생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를 따르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	ㅇ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ㅇ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계상/산정 기준	ㅇ 원칙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유·임차·사용대차·생산·판매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는 현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는 현금 계상

구분		내용
		-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사용료)는 계상이 불가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사용료)는 계상 가능.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기관 내부 또는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사용 가능. 이 경우 정산시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제출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 (i-Tube 또는 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구입 후 발생한 잔액은 연구시설·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ㅇ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가 가능한 경우(검수완료를 기준으로 함)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 가능. 단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아래 각 목은 예외로 함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1개월 전 -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사용료)를 기준으로 현금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함 .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을 계상 한 경우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 기관 단위 연구시설・장비의 통합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과제별로 안분할 수 있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0조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은 지정일 이후에 신규로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5% 이내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 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이후 변경은 불가하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정대체 하여야 함 ㅇ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에 대하여 비용 산정 ※ 연구인프라 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이 불가능 ㅇ 구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ㅇ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산정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ㅇ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구분		내용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계상/산정 기준	ㅇ 원칙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재료비는 현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재료비 구입비는 현금 계상 - 건당 100만원 이하의 재료비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연 1,000만원 한도) ㅇ 연구재료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소요 금액으로 현금 산정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연구개발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원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연구개발기관 보유 시험제품·시험설비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연구개발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제작할 경우 실소요 금액(외부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연구재료 제작비로 계상 - 연구개발기관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할 경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 연구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ㅇ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사용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하며, 이 경우 평가단 승인 혹은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함)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ㅇ 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ㅇ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구분		내용
		ㅇ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계상/산정 기준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를 계상하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불가 - 중소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표준화 활동과 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 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참여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창의활동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초과하여 계상 가능 - 전문가활용비는 참여연구자가 아니며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비 등을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 협약(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 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 · (전문가 활용인력이 제한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에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전문가활용은 예외로 계상 가능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자체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전문가 활용인력이 제한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인정 분야> 유형 / 전문가 소속부서 / 전문가 활용비 사용가능 여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A기관 ↔ B기관 소속 전문가 /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 X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A기관 ↔ B기관 소속 전문가 /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 O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내 전문가 활용 A기관 → A기관 소속 전문가 /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 X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내 전문가 활용 A기관 → A기관 소속 전문가 /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 O -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구분		내용
		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된 시험·분석·검사, 안전점검·검사비,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등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연구개발기관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연구개발기관 소속 전문가 등) 사용은 불가 · 연구개발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책정 누락 등 부득이 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내용 중 핵심공정·기술 개발을 제외한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비용으로 계상 ·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비 성격은 계상불가 (단,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 ㅇ (회의비)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부대비용,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관련 비용 계상 불가 ㅇ (출장비) 국내외 여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외 출장 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외 여비는 산정 불가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 산정할 수 있으며 월 또는 연단위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도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매 가능(단 비영리기관에 한해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분담하여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 가능)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1개월 전 나. 그 외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2개월 전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구분		내용
		· 여러 연차에 걸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연구비 절감 등의 이유로 전문기관의 승인 후 다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차별로 분할 집행 가능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구입·임차하였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자체재원으로 구입·임차한 소프트웨어(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외)에 대하여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 계상(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여야 하며,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함) ·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준 및 사용기한을 준용함) ㅇ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에 따라 사용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 협약한 경우만 계상 가능.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의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용성 장비 구입을 허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함(개인성용품, 기호용품 등은 계상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임차·사용 대차비용을 계상 -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제반되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 · 개인성용품, 기호용품 계상불가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직접 관련 있는 연구환경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으로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계상불가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계상불가 ·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계상불가 ㅇ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과제와 관련없는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은 사용 불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계상불가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계상불가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계상불가 ·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계상불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및「고용보험법」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계상 불가 ·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계상 불가

구분		내용
		ㅇ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비용에 대한 종합사업관리비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ㅇ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ㅇ (그 밖의 비용)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문헌 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 복사,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토대로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34조제6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에 반영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34조제6항각호의 기관에 해당 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산정) -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실증 참여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일단위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정 ㅇ (증빙면제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강사수당 제외), 국내출장비, 야근식대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직접비의 10% 한도)
연구수당	**사용용도**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연구근접지원인력 등 지원인력은 미해당
	계상/산정기준	ㅇ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단계별 총액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사업 공고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인프라구축, 단순 장비 도입 등)에 따라 연구수당 비율을 수정인건비의 20%보다 낮게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함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수당 총액 이내에서 연차별 인건비 증액 등 부득이 한 경우 연차별 연구수당액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연차별로 연구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연차 마지막 인건비 지급 후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 ㅇ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에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 지급하여야 함 -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정한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학생연구자는 예외) ㅇ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능함 -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주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내용</th></tr>
<tr><td colspan="2"></td><td>연구개발기관인 경우
-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o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또는 미완료일 경우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table><tr><th>평가결과</th><th>연구수당</th></tr><tr><td>중단(성실)</td><td>중단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에서 50% 감액
(연구개발비가 지급된 연차까지만 계산)</td></tr><tr><td>미완료</td><td>최종단계 또는 중단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미지급</td></tr></table></td></tr>
<tr><td rowspan="2">보안
수당</td><td>사용
용도</td><td>o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td></tr>
<tr><td>계상/
산정
기준</td><td>o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수정인건비 중 각 개인별 인건비의 3%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함

o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보안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보안수당을 계상하려는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 계상 가능(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의 총액은 해당 과제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td></tr>
<tr><td rowspan="2">연구혁신비</td><td>사용
용도</td><td>o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연구재료비 또는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비용</td></tr>
<tr><td>계상/
산정
기준</td><td>o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음
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단계 구분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하는 연구재료비
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단계 구분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하는 연구활동비

o 연구혁신비는 연차별 평균 5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o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구혁신비로 계상할 수 없음
가. 건별 3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재료비
나. 건별 5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활동비
다. 인건비에 해당하거나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
라. 국외에서 사용되는 비용

o 연구혁신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필요

o 연구혁신비에 대해 RCMS를 통해 사용목적 및 거래내역을 입력한 경우 해당 연구혁신비에 대한 증명자료를 적정하게 갖춘 것으로 봄

o 연구혁신비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식비 계상 가능</td></tr>
<tr><td>국제공동</td><td>사용</td><td>o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전문기</td></tr>
</table>

구분		내용
연구개발비	용도	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비용
	계상/산정 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또는 외국인) 간 공동연구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좌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당 국외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 사용 시 동 요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간접비	사용 용도	ㅇ 인력지원비(영리기관) 1.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3.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ㅇ 인력지원비(비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인력지원비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관련 비용 -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인력지원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우수학생장학금, 근로장학금 ㅇ 연구지원비(영리기관) 1.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개발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2.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4.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ㅇ 연구지원비(비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연구지원비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또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 -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연구지원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 연구개발과제 수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비용 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위한 비용 ㅇ 성과활용지원비(영리기관)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구분		내용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ㅇ 성과활용지원비(비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연구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계상/산정 기준	ㅇ 간접비비율은 간접비를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로 나눈 값으로서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에 따름(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등을 반영하여 간접비율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 수행 도중 연구개발기관이 변경 되는 경우, 양도양수 시 정한 시점에 변경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하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6조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이관하여야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 가능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제3항을 준용하여 해당 간접비비율을 적용 ㅇ 영리기관(공기업 포함) -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기관유형별 간접비 사용기준]

구분		내용
		ㅇ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 가능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한 간접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 간접비 감액 가능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 불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ㅇ 대학 -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 가능 -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대학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대학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 불가 - 대학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 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계상

구분		내용
		-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함 -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동안에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가능함(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변경 전)

<table>
<tr><th>구분</th><th>주요내용</th></tr>
<tr><td>공통사항</td><td>

1. 연구개발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에 등록된 연구개발비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제한업종 등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연구개발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차단계 이월금은 예외)

<table>
<tr><th>지출원인행위
(계약 등 이에 준하는 행위)</th><th>입고 또는 이행 완료</th><th>연구개발비 지출</th><th>인정·불인정 여부</th></tr>
<tr><td rowspan="4">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내</td><td rowspan="2">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내</td><td>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내</td><td>인정</td></tr>
<tr><td>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후</td><td>인정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용내역 포함)</td></tr>
<tr><td rowspan="2">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후</td><td>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내</td><td>불인정</td></tr>
<tr><td>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후</td><td>이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인정</td></tr>
</table>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연구개발비 사용을 한 경우
   - 단, 대학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

5. 연구개발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 사용을 한 경우

6.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 금액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개발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바. 기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연구개발비 사용 금액

8. 연구개발비 변경, 단계 간 이월 등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9.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11. 협약시 현물 산정분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용한 경우의 사용금액 또는 실제 현물 부담분이

</td></tr>
</table>

구분	주요내용
	협약시 현물 산정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의 차액. 이 때에는 부당사용 또는 부족 가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회수(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 등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경우를 포함) 12.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출원인행위는 완료하였으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함) 가. 단계 또는 최종평가를 위한 인쇄비, 회의비, 여비, 결과물의 운송비 등 평가관련 비용 나.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소프트웨어 후불지급 사용액 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학생인건비 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마. 평가시 제출하기 위한 시험분석 관련 비용 바. 최종평가 이전에 집행한 연구개발성과 관련 특허 출원비용 및 논문 게재료 사. 학회·세미나 참가비(각 학회 및 세미나 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함) 아. 여러 단계에 걸쳐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등에 대한 선금 및 중도금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1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사용 중지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 15. 특별평가에 따른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사용한 금액 16. 현물로 계상한 항목을 현금으로 이중 계상한 경우 17. 최소 인건비계상률 10%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인건비계상률 10%를 기준으로 부족한 비율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참여기간 기준의 인건비를 회수 - 연구자의 급여총액 증가 등 협약 및 신규등록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최소 인건비계상률 10%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 - 연구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 계상 없이 인건비계상률만 산정하여 참여 가능 18.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연구비 카드 취소 금액, 환차익 등을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금액 19. 직접비로 집행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 중 평가단 승인 혹은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은 비용
직접비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다.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단, 연구개발기관에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본래의 해당월 급여를 지급한 후 해당과제의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한 경우는 예외 라.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이외 간접비의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의 급여를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 마.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 ※ 단, 급여대장 상 급여총액에 기재되어 세무신고가 된 경우 예외 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구분	주요내용
	사.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아. 연차별 영리기업 참여연구자의 현금인건비를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증액 또는 감액)하여 사용한 금액 자.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사용액 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사용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회수함 차. 제25조제6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보다 적을 때 그 차액. 단, 대체 또는 추가채용한 청년인력이 있을 경우 인건비 집행액을 가산할 수 있다. 카. 영리기관 계좌로 일괄 흡수 후 3주 내에 개인별 지급을 완료하고 처리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액 2. 내부인건비 가. 개인별 인건비계상률 연평균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자) 3.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나. 연구개발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다.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인건비를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금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사용 금액 3. 월별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사용 금액 4. 학생연구자를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개발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정 2.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비 ※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정 3.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거나,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 또는 구매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 4.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연구장비로서 중앙장비심

구분	주요내용

의위원회 또는 각 전문기관의 심의결과 '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5.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개월 전에 납품(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금액. 단, 아래 각목의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도입기간을 예외로 함.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1개월 전

6.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 해당연도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한 금액(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된 경우는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계정 대체한 경우는 예외로 함)

[연구재료비]

1.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구입 재료비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2.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사용된 경우
3.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제품, 시작품을 현물로 사용한 금액

[연구활동비]

1. 중소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특허전략 수립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금액(특허 전략 수립 후 잔액은 전용 가능)

2. 표준연계 개발과제의 경우 표준연계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표준화활동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금액(표준연계 전략 수립 후 잔액은 전용 가능)

3. 사업 공고 시 창의활동비 사용 가능사업으로 정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서의 사용금액

4.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가. 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계상 누락 등 부득이 한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예외사례>

구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지급 유형	회수 대상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료 지급	영리,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X
	영리, 비영리기관 → 영리기관	O
그 외(단독 판매처 등)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연구개발기관	X

   나.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연구개발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5.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가. 연구개발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

구분	주요내용
	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단, ①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②전문가 활용 POOL 제한 등 부득이한 상황 시, 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 ③ 전문가 활용POOL 제한 등 부득이한 상황 시,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전문가활용은 예외로 함)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자체규정 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연구개발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마.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개발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자.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문기관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 등 6.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가.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사용한 금액(단, 10만원 이하의 경우 회의목적/일시/장소/참석자명단을 포함한 자료로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대체 가능) 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연구개발기관 내부 직원**(내부 및 외부참여연구자 포함) 간 회의비로 사용된 금액 * 동일법인 내에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7.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가. 평일 점심 식대로 사용한 금액 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사용된 금액 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사용된 경우 포함) 8.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한 국내출장 여비 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구분	주요내용
	9. 국외 출장경비 가. 연구개발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나.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라.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10.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가. 신문구독료(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연구개발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공공요금 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11.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프트웨어 활용비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그 외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12.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한 사용 금액(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를 인정) 13. 비영리기관이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없이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한 경우 (단, 필기구 등의 사무용품비는 계획과 관련 없이 사용 가능) 14. 영리기관이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첨부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한 내용과 달리 사용한 금액(단, 필기구 등의 사무용품비는 계획과 관련 없이 사용 가능) - 사무용 기기(범용성 PC,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5.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중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개인성용품, 기호용품 나. 영리기관이 사용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제반되는 비용과 무관한 소모성 경비 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각항에 해당하는 비용 ①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②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③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등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16. 협약시 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 단,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또는 기업이 주관하는 유

구분	주요내용
	연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함. [연구수당] 1. 협약시 산정한 연구수당(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계상한도를 말한다)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 해당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연구개발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자가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동안 참여연구자가 1명인 경우를 의미하며 연구책임자 1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해당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자는 2인으로 간주함 4. 수정인건비를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사용(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이체금액은 실사용액에 해당)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사용한 금액 7.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 사용한 금액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또는 현물 부담한)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한 금액. 단, 학생연구자는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도 회수하지 아니함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회수대상 연구수당 사용액 / 개인별(지급 또는 현물부담) 인건비 총액 70% 이내 / 70% 이내 / 미회수 70% 이내 / 70% 초과 / 회수 (학생연구자인 경우 미회수) 70% 초과 / 70% 이내 / 회수 (참여연구자가 1인이면 미회수) 70% 초과 / 70% 초과 / 회수 8. 연구수당의 사용비율이 직접비의 사용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불인정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20/100) * 직접비사용비율(%) = $\left(\frac{\text{해당단계 직접비중사용금액}}{\text{해당단계 직접비협약금액}}\right)\times 100$ · 직접비(현금) 대상, 전단계 이월금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단계 직접비 중 사용금액(분자)에서 차단계 이월금액은 미사용 금액으로 미포함하며, 직접비 협약금액(분모)에는 포함됨 9.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10. 영리기관 계좌로 일괄 흡수 후 3주 내에 개인별 지급을 완료하고 처리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액
간접비	[간접비]

구분	주요내용
	1. 협약 시 산정한 금액보다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을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간접비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3.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 4.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사용한 금액 5.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금액 6.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 (\frac{해당단계\ 직접비중사용금액}{해당단계\ 직접비협약금액}) \times 100$ · 직접비(현금) 대상, 전단계 이월금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단계 직접비 중 사용금액(분자)에서 차단계 이월금액은 미사용 금액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비 협약금액(분모)에는 포함됨 ※ 특별평가 등에 따른 중단으로 협약의 해약이 된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일괄하여 관리·사용하는 간접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가.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 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 한 금액 나.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별표 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변경 후)

<table>
<tr><th>구분</th><th>주요내용</th></tr>
<tr><td>공통사항</td><td>
1. 연구개발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에 등록된 연구개발비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제한업종 등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연구개발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차단계 이월금은 예외)
<table>
<tr><th>지출원인행위
(계약 등 이에 준하는 행위)</th><th>입고 또는 이행 완료</th><th>연구개발비 지출</th><th>인정·불인정 여부</th></tr>
<tr><td rowspan="4">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내</td><td rowspan="2">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내</td><td>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내</td><td>인정</td></tr>
<tr><td>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후</td><td>인정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용내역 포함)</td></tr>
<tr><td rowspan="2">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후</td><td>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내</td><td>불인정</td></tr>
<tr><td>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후</td><td>이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인정</td></tr>
</table>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연구개발비 사용을 한 경우
- 단, 대학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

5. 연구개발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 사용을 한 경우

6.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 금액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개발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바. 기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연구개발비 사용 금액

8. 연구개발비 변경, 단계 간 이월 등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9.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11. 협약시 현물 산정분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용한 경우의 사용금액 또는 실제 현물 부담분이
</td></tr>
</table>

구분	주요내용
	협약시 현물 산정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의 차액. 이 때에는 부당사용 또는 부족 가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회수(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 등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경우를 포함) 12.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출원인행위는 완료하였으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함) 가. 단계 또는 최종평가를 위한 인쇄비, 회의비, 여비, 결과물의 운송비 등 평가관련 비용 나.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소프트웨어 후불지급 사용액 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학생인건비 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마. 평가시 제출하기 위한 시험분석 관련 비용 바. 최종평가 이전에 집행한 연구개발성과 관련 특허 출원비용 및 논문 게재료 사. 학회·세미나 참가비(각 학회 및 세미나 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함) 아. 여러 단계에 걸쳐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등에 대한 선금 및 중도금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1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사용 중지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 15. 특별평가에 따른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사용한 금액 16. 현물로 계상한 항목을 현금으로 이중 계상한 경우 17. <삭 제> 18.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연구비 카드 취소 금액, 환차익 등을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금액 19. 직접비로 집행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 중 평가단 승인 혹은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은 비용
직접비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다.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단, 연구개발기관에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본래의 해당월 급여를 지급한 후 해당과제의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한 경우는 예외 라.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이외 간접비의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의 급여를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 마.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 ※ 단, 급여대장 상 급여총액에 기재되어 세무신고가 된 경우 예외 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사.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아. 연차별 영리기관 참여연구자의 현금인건비를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증액 또는 감액)하여 사용한 금액 자.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사용액 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사용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회수함 차. 제25조제6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

구분	주요내용
	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보다 적을 때 그 차액. 단, 대체 또는 추가채용한 청년인력이 있을 경우 인건비 집행액을 가산할 수 있다. 카. 영리기관 계좌로 일괄 흡수 후 3주 내에 개인별 지급을 완료하고 처리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액 2. 내부인건비 가. 개인별 인건비계상률 연평균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자) 3.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나. 연구개발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다.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인건비를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금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사용 금액 3. 월별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사용 금액 4. 학생연구자를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개발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정 2.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비 ※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정 3.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거나,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 또는 구매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 4.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연구장비로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또는 각 전문기관의 심의결과 '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5.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개월 전에 납품(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금액. 단, 아래 각목의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도입기간을 예외로 함.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구분	주요내용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1개월 전

6.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 해당연도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한 금액(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된 경우는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계정 대체한 경우는 예외로 함)

[연구재료비]

1.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구입 재료비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2.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사용된 경우
3.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제품, 시작품을 현물로 사용한 금액

[연구활동비]

1. 중소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특허전략 수립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금액(특허 전략 수립 후 잔액은 전용 가능)

2. 표준연계 개발과제의 경우 표준연계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표준화활동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금액(표준연계 전략 수립 후 잔액은 전용 가능)

3. 사업 공고 시 창의활동비 사용 가능사업으로 정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서의 사용금액

4.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가. 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계상 누락 등 부득이 한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예외사례>

구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지급 유형	회수 대상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료 지급	영리,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X
	영리, 비영리기관 → 영리기관	O
그 외(단독 판매처 등)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연구개발기관	X

나.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연구개발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5.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가. 연구개발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단, ①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②전문가 활용 POOL 제한 등 부득이한 상황 시, 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 ③ 전문가 활용POOL 제한 등 부득이한 상황 시,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전문가활

구분	주요내용
	용은 예외로 함)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자체규정 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연구개발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마.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개발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자.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문기관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 등 6.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가.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사용한 금액(단, 10만원 이하의 경우 회의목적/일시/장소/참석자명단을 포함한 자료로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대체 가능) 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연구개발기관 내부 참여연구자**(내부 및 외부참여연구자 포함) 간 회의비로 사용된 금액 * 동일법인 내에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7.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가. 평일 점심 식대로 사용한 금액 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사용된 금액 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사용된 경우 포함) 8.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한 국내출장 여비 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9. 국외 출장경비 가. 연구개발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나.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라.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구분	주요내용
	10.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가. 신문구독료(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연구개발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공공요금 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11.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를 말한다)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프트웨어 활용비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그 외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12.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한 사용 금액(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를 인정) 13. 수행기관 귀책으로 인한 연구개발 중단 과제의 다년 계약을 통해 집행한 소프트웨어 활용비 중 잔여기간에 대한 귀속분 14. 비영리기관이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없이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한 경우 (단, 필기구 등의 사무용품비는 계획과 관련 없이 사용 가능) 15. 영리기관이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첨부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한 내용과 달리 사용한 금액(단, 필기구 등의 사무용품비는 계획과 관련 없이 사용 가능) - 사무용 기기(범용성 PC,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6.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중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개인성용품, 기호용품 나. 영리기관이 사용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제반되는 비용과 무관한 소모성 경비 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각항에 해당하는 비용 ①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②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③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등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17. 협약시 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 단,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또는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함. [연구수당]

구분	주요내용

1. 협약시 산정한 연구수당(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계상한도를 말한다)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 해당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연구개발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자가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동안 참여연구자가 1명인 경우를 의미하며 연구책임자 1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해당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자는 2인으로 간주함

4. 수정인건비를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사용(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이체금액은 실사용액에 해당)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사용한 금액

7.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 사용한 금액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또는 현물 부담한)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한 금액. 단, 학생연구자는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도 회수하지 아니함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연구수당 지급액		연구수당 회수대상
연구수당 계상액	개인별(지급 또는 현물부담) 인건비 총액	
70% 이내	70% 이내	미회수
70% 이내	70% 초과	회수 (학생연구자인 경우 미회수)
70% 초과	70% 이내	회수 (참여연구자가 1인이면 미회수)
70% 초과	70% 초과	회수

8. 연구수당의 사용비율이 직접비의 사용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불인정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20/100)

   $$* \text{직접비사용비율}(\%) = \left(\frac{\text{해당단계 직접비중사용금액}}{\text{해당단계 직접비협약금액}}\right) \times 100$$

   · 직접비(현금) 대상, 전단계 이월금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단계 직접비 중 사용금액(분자)에서 차단계 이월금액은 미사용 금액으로 미포함하며, 직접비 협약금액(분모)에는 포함됨

9.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10. 영리기관 계좌로 일괄 흡수 후 3주 내에 개인별 지급을 완료하고 처리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액

[연구혁신비]

1.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구분	주요내용
간접비	[간접비] 1. 협약 시 산정한 금액보다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을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간접비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3.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 4.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사용한 금액 5.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금액 6.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 (\frac{해당단계\ 직접비중사용금액}{해당단계\ 직접비협약금액}) \times 100$ · 직접비(현금) 대상, 전단계 이월금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단계 직접비 중 사용금액(분자)에서 차단계 이월금액은 미사용 금액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비 협약금액(분모)에는 포함됨 ※ 특별평가 등에 따른 중단으로 협약의 해약이 된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일괄하여 관리·사용하는 간접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가.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 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 한 금액 나.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별표 7]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증빙서류(변경 전)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보관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단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
인건비	ㅇ 내부인건비(겸직포함) -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현황표(연구자/지원인력 성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참여연구자 현황표에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별도의 급여명세서(월별) 및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 (영리기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리기관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연구근접지원인력)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박사후 연구자) 근로계약서 -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 승인 관련 서류 등 ㅇ 외부인건비 -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계약서 - 외부참여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파견의 경우) 파견 및 피파견 기관의 파견인사 관련 공문서
학생인건비	ㅇ (공통)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서류, 정부출연기관은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상태 확인서류,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학생인건비 지출증빙서류 제출 면제하며 아래 서류만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서류, 계좌이체증명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참여연구자 현황표(학생연구자 성명, 참여기간, 계상률, 변경사항 등)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증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연구시설·장비비	ㅇ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거래명세서 ㅇ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미만이면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i-Tube 등록 확인서 ㅇ 장비요령 제9조에 의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대상 장비의 경우 장비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ㅇ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및 연구장비 심의 결과 "승인" 공문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에 해당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말함 ㅇ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ㅇ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ㅇ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규 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 ㅇ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연구재료비	ㅇ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거래명세서 ㅇ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ㅇ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규 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일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ㅇ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단,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요청 시 제출 필요 ㅇ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ㅇ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연구활동비	ㅇ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직접비의 40%를 초과 계상한 경우 필요성에 대한 소명서 ① 기술도입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기술도입 계약서 - 비용지급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특허등록원부(권리 변경등록), 기술검수조서 ② 전문가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연구개발서비스(시험분석 등) 결과서 ㅇ 회의비 ① 회의장 임차료(사용료), 속기료, 통역료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견적서 ②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 카드매출전표 ③ 회의·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국외 출장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내부 여비규정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ㅇ 국내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 출장 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③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로 갈음 ㅇ 소프트웨어활용비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ㅇ 연구실 운영비 ①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②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③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ㅇ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인력지원비 ① 국내외 교육 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야근·특근 식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지출결의서 -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ㅇ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ㅇ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① 문헌구입비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② 논문 게재료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③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공공요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 내역 ④ 일용직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 근로계약서 및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근로내용 확인서 - 지급명세서 - 계좌이체증명
연구 수당	ㅇ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 지급신청서 - 계좌이체 증빙 -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아닌 경우에 한함])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연구수당 지급 관련 내부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 별도의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보안 수당	ㅇ 지급신청서 및 계좌이체증명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ㅇ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ㅇ 해당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자체정산결과보고서([서식 7] 연구개발기관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참고하되 기관 또는 국가별 서식이 있을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간접비	ㅇ 비영리기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ㅇ 영리기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지출 관련 문서(품의서, 구매의뢰서 등) -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기타추가 요구자료	ㅇ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관련 문서(전문기관의 승인 문서,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별표 7]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증빙서류(변경 후)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보관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단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
인건비	ㅇ 내부인건비(겸직포함) -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현황표(연구자/지원인력 성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참여연구자 현황표에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별도의 급여명세서(월별) 및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 (영리기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리기관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연구근접지원인력)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박사후 연구자) 근로계약서 -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 승인 관련 서류 등 ㅇ 외부인건비 -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계약서 - 외부참여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파견의 경우) 파견 및 피파견 기관의 파견인사 관련 공문서
학생인건비	ㅇ (공통)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서류, 정부출연기관은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상태 확인서류,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학생인건비 지출증빙서류 제출 면제하며 아래 서류만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서류, 계좌이체증명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참여연구자 현황표(학생연구자 성명, 참여기간, 계상률, 변경사항 등)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증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연구시설·장비비	ㅇ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거래명세서 ㅇ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면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i-Tube 등록 확인서 ㅇ 취득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장비의 경우 장비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심의 결과 공문 ㅇ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및 연구장비 심의 결과 "승인" 공문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에 해당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말함 ㅇ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ㅇ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ㅇ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규 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 ㅇ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연구재료비	ㅇ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거래명세서 ㅇ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ㅇ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규 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일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ㅇ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단,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요청 시 제출 필요 ㅇ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ㅇ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연구활동비	ㅇ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직접비의 40%를 초과 계상한 경우 필요성에 대한 소명서 ① 기술도입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기술도입 계약서 - 비용지급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특허등록원부(권리 변경등록), 기술검수조서 ② 전문가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연구개발서비스(시험분석 등) 결과서 ㅇ 회의비 ① 회의장 임차료(사용료), 속기료, 통역료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견적서 ②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목적/일시/장소/참석자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 카드매출전표 ③ 회의·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국외 출장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내부 여비규정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ㅇ 국내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 출장 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③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로 갈음 ㅇ 소프트웨어활용비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ㅇ 연구실 운영비 ①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②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③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ㅇ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인력지원비 ① 국내외 교육 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야근·특근 식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지출결의서 -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ㅇ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ㅇ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① 문헌구입비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② 논문 게재료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③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공공요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 내역 ④ 일용직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 근로계약서 및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근로내용 확인서 - 지급명세서 - 계좌이체증명
연구 수당	ㅇ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 지급신청서 - 계좌이체 증빙 -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아닌 경우에 한함])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연구수당 지급 관련 내부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 별도의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보안 수당	ㅇ 지급신청서 및 계좌이체증명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ㅇ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ㅇ 해당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자체정산결과보고서([서식 7] 연구개발기관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참고하되 기관 또는 국가별 서식이 있을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간접비	ㅇ 비영리기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ㅇ 영리기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지출 관련 문서(품의서, 구매의뢰서 등) -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기타추가 요구자료	ㅇ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관련 문서(전문기관의 승인 문서,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